

성평등 책이

어린이청소년

유해도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일 시 : 2023. 8. 1(화) 14:00 ~ 16:00
- 장 소 : 내포혁신플랫폼 M1 회의실

투 투 회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책이

유해도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2023. 8. 1.(화) 14:00 ~ 16:00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홍성군 흥복읍 흥예공원로 20

경과보고
충남 지역 성평등 도서 관련 현황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제 1
퇴행하는 성평등, 민주주의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제 2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안찬수(비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토론 1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토론 2
서현주
다음북클럽

토론 3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토론 4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토론 5
정재영
홍성YMCA 사무총장

토론 6
충남교육청

현재 토론
이우 마무리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문의 | 010. 4132. 1413

토론회 취지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된 상황에, 충남의 공공도서관(지자체, 교육청)에 있는 성평등 도서가 수난을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들며 ‘성평등’ 도서가 어린이 청소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유해도서’ 라는 책들은 2019년 나다움어린이책 선정도서 134권을 모두 포함하며, 페미니즘 관련 도서만이 아니라 ‘마리 퀴리’ (웅진주니어), ‘이태영’ (비룡소) 등 위인전과 ‘평화그림책1-꽃할머니’ (사계절)처럼 위안부 피해 여성의 구술사를 바탕으로 한 책도 있다.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한 개정 교육과정은 성인지 감수성과 다양성 교육에 대한 거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공공도서관을 향한 ‘금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학문·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평등 도서를 둘러싼 현 상황의 문제점, 원인과 대안을 짚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행 계획

시간	내용		비고
[사회] 장규진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14:00~14:10	10'	경과보고	충남지역 성평등 도서 관련 현황
14:10~14:50	20'	발제(1)	퇴행하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20'	발제(2)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14:50~15:00	10'	휴식	
15:00~15:45	45'	토론(1)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토론(2)	서현주 (나다움어린이책선정위원)
		토론(3)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토론(4)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토론(5)	정재영 (홍성YMCA)
		토론(6)	(충남교육청)
			[좌장]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틀)
15:45~16:00	15'	전체 토론 이후 마무리	

성평등 도서 관련 충남지역 현황

유내영(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집행위원장)

1. 일자별 경과

- 5월 16일. 충남차제연으로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가 도서관으로 보내는 홍보물 배포에 대한 시민제보가 들어옴.



우리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하기

부모님들께

1. 지금 이 내용을 다른 학부모님들께 전해주세요
2.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에 위와 같은 책들을 확인하고 유해한 도서는 볼 수 있도록 권해주세요
3.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갖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4. 상담문의: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 (070-7797-4482)
5. 후원: 우체국 102152-01-008434

(예금주: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

지역별 도서관에 비치된 문제도서 목록

제목 / 도서관	안양/안양각도	고양/고양2각도	동원	수원/수원각도	광명/광명각도	오남	미사	나들
홍익의 그림자	1/0	1/0	1	0/0	1	1	1	1
어디로 날지는 몰라요	1/1	1/0	1	1/0	0	0	1	2
아름답고 단정	1/0	0	1	0/0	0	1	1	1
우리가 커온 영재학교	0/0	0	1	0	0	0	1	1
100을 위한 영재학교	0/0	0	0	0	0	0	1	1
여우의 활약기	2/0	0	0	0	0	2	2	3
영감을 시작한 나영재	1/0	1/0	1	0	0	1	1	1
소년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1/0	1/0	1	0	0	0	2	3
소녀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1/0	1/0	1	0	0	1	2	2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영재	1/0	1/0	0	0	0	1	1	1
청소년 동기 인문학	0/0	1/0	0	0	0	0	1	1
Girl's talk	0/0	0	0	0	0	1	1	2
사토기 내 통 사랑살림서	1/1	1/1	1	0	0	1	0	1
자부 명령어 불린다면	0/0	0	0	0	0	1	1	1
만생 내 이해는 페미니즘이야	1/0	1/0	1	0	0	1	2	1
나의 첫 비디 수업	1/0	1/0	1	0	0	1	2	2
소년 살치고 사랑고 사랑하라	1/0	1/0	1	3/1	0	1	1	1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1/1	1/0	1	1/0	1	1	1	1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1/1	1	3/1	0	0	1	0	2
만생 (8권)은 페미니즘이야	1/0	1/0	1	3/1	0	0	0	1
오케인스, 원서인스온	1/0	1/0	1	0/0	0	1	1	1
이제는 페미니스트	1/0	1/0	1	0	1	1	1	1
누가 진짜 영재야	1/0	0	1	1/0	0	1	0	1
성평등 도서 (94권)	26/5	22/1	26	7/2	5	39	62	62
현대도서 (260권)	100/1	41/5	75	11/4	13	57	104	123
페미니즘 도서 (336권)	127/9	78/4	93	6/5	14	216	328	346

2022 개정교육과정 중 성혁명 배제 결정 의미 해설(요약)

다음은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 12. 14. 국교위 수정 의결과 12. 22. 교육부 고시에 담긴 성혁명 교육 배제 결정의 의미와 실행 과정 유의사항에 관하여 복음법률가회가 발표한 내용 요약이다.

1. 취지

교육부는 2022. 12. 22. 고시 제2022-33호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다.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관련해 2015년 이전 도입되었던 성혁명 교육 용어들 중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삭제하고 중심 용어인 성적자기 결정권은 유지하는 대신, 성취기준 해설에서 강압 등으로부터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본 건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수정 고시는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내용을 배제하라는 국가 최고교육결정기관의 법적 권위가 담겨 있어, 교육과정 안의 성 혁명적 용어 의미까지 규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정확한 법적 효과와 의의, 향후 과제에 대해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을 반대해온 복음법률가회가 아래와 같이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 12. 14. 국교위 성혁명 배제 수정 의결의 의의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수정 고시는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을 배제하라는 국가 최고교육결정기관의 권위 있는 법적 결정'이다. 국교위는 12. 13. 소위원회에서 성적자기 결정권 의미를 성취기준 해설에서 명확히 제시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특별히 성전환과 조기성애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할 것을 넣어 합의하였다(이하 "본 건 괄호 안 문구"). 국교위는 다음날 12.14. 전체 위원회에 소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 설명한 후 의논 후 다수결로 소위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건 수정 의결을 성혁명 관련 모든 용어들에 적용되는 기본적 방향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유해한 동성애자나 낙태행위자를 발생 시키는 교육도 배제하는 결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성혁명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의 표현을 금지하는 전체주의적 성 독재를 구현하는 차별금지법 옹호 내용을 교육에서 배제하겠다는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 국교위의 12. 14. 수정 의결은 사실상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고시 내용을 구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5월 23일. ‘충남차제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담당자가 참여한 회의 개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몇 단체가 공동으로 ‘다학연’ 홍보물에 사용된 삽화가 ‘살아남기’ 시리즈로 유명한 출판사의 삽화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로 함.
- 6월 1일. 충남 서천군의회 환경석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어린이 코너에 있는 도서 일부가 성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유해하므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기사 보도됨. 기사를 충남차제연은 7월 10일에 알게 되었음.
- 6월 2일. 해당 출판사로 공문 발송.

①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천안, 한국성폭력상담소

수신	미래엔 출판사 신광수 대표 한현동 그림작가
발신	대표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총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천안,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010-5019-0121) act@politicalmamas.kr
제목	충남지역 부적절한 인쇄물 내 <살아남기> 시리즈 이미지 사용에 관한 질의 및 조치 요청의 건
발송일	2023년 6월 2일(금), 총 10쪽

1. 귀 단체 및 귀하에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천안,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충남지역 내 차별혐오선동이 포함된 부적절한 인쇄물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는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대표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②

3. 지난 5월 본 단체들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이하 '다학연')이라는 단체가 인쇄물 <우리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를 충청남도 내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등기소포를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며 비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쇄물은 1) 성평등 가치에 대한 왜곡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 성평등 관련 도서들을 '유해' 도서로 매도하고 있으며, 2) 양육자들에게 성평등 관련 도서 배포 민원을 도서관에 넣도록 촉구하고 있어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단체들은 '다학연'의 인쇄물 배포 및 비치 요구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해당 사안의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학연'의 인쇄물 <우리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가 미래엔 출판사의 <살아남기> 시리즈 중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기> 제목을 차용했을 뿐 아니라, 그림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 출판사 및 저작권자에 다음과 같은 질의 및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 귀 출판사 및 저작권자는 '다학연'과 저작물 이용에 별도의 협의 및 계약을 추진한 바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다학연'이 별도 협의 및 계약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인쇄물이 배포되거나 비치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1) 해당 인쇄물이 양육자 제공용으로 배포되고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에 비치될 경우, 어린이청소년들은 편견과 혐오가 깊이 뿌리내리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양육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2) 특히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발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③

한다는 포용성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생활 교육기관입니다. 어린이청소년과 양육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선동 행위는 도서관의 교육적 가치를 해치는 행위라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3) <살아남기> 시리즈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과학 상식 습득을 위한 도서로 20여 년 이상 대중적으로 사랑받아온 중요한 작품입니다. 저작물 무단 사용일 경우 저작권 침해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무엇보다 차별혐오 선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남기> 시리즈에도 큰 불명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과 평등, 포용과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귀 출판사 및 저작권자의 적절한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기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붙임1]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_인쇄물_01~03.jpg (총 3장)
[붙임2]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인쇄물 내용

④

대표단체 정치하는엄마들(직인)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천안, 한국성폭력상담소

제출자 권은숙 공동대표 권은숙 · 박민아 · 서성민
시행 공문_정치하는엄마들_20230602_01 접수
(0693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4층 / www.politicalmamas.kr
402호
전화 010-5019-0121 전송 0507-9926-475 / act@politicalmamas.kr / 비공개
[붙임1]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_인쇄물_01~03.jpg (총 3장)

-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_인쇄물_01.jpg

- 6월 4일. 충남차제연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해당 도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를 열기로 결정.
- 6월 13일. 출판사에서 공문 회신.



- 6월 21일. 1차 책담회 개최.

6.21 (수) 7.5 7.19 8.2 8.16

* 본 책담회는 4회차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회차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라는거지?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

오후 7:00 ~ 9:00

1. 발제1.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발제2.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발제3. 걸스톰리 나 - 첫 생리 이야기
 발제4. 아름다운 탄생 - 아이와 사랑
2. 전문가와 의견 나누기 (나영정(타리)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브리바디 플래저팀 장)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다학연)은 성평등과 성적 권리에 대한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평등과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혐오가 반대하는 책이라면 평등의 필독서가 아닐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해당 도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책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문의 | 010 4132 1413

- 1차 책담회
 - 발표자들은 해당 도서들은 생리와 임신, 섹스와 자위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며, 분비물, 생리컵에 대한 설명은 중년의 독자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좋은 책들이라고 소개함.
 - ‘조기성애화’를 부추긴다? 자위, 섹스, 생리, 임신에 대한 성교육은 그럼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 호기심과 궁금증을 편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신뢰있는 관계의 중요성
 - 성기에 대한 사실적 일러스트가 외설? 자신의 몸을 자세히 알고 아끼는 것의 중요성. 먹고 말하는 ‘입’ 속을 보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질’을 보는 것은 문제?
 - 성적 즐거움은 모두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고, 성적 권리는 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 보수기독교는 생식과 연결되지 않는 성교는 문제라 함. ‘원치 않는 임신’과 ‘책임감 있는 섹스’ 관련, 임신을 원치 않으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면 되고, 문제는 임신 이전, 즉 ‘원치 않는 섹스’이며, 이를 감추는 것이 오히려 문제. 성교육은 결국 ‘관계’에 대한 것.
 - ‘조기성애화’라는 프레임은 성이 즐거움과 권리임을 은폐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금지하는 것임. 누구나 성에 대해 배우고 알고 누리는 것이 필요함.

- 7월 5일. 2차 책담회 개최.

6.21 7.5 (수) 7.19 8.2 8.16

* 본 책담회는 4회차까지 온라인중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회차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라는거지?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

오후 7:00 ~ 9:00

1. 발제1.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발제2. 안녕 내이름은 페미니즘이야
발제3. 나의 첫 젠더 수업

전문가와 의견 나누기
(동은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2.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다음세대를여는학부모연합(다학연)은 성평등과 성적 권리에 대한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려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평등과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혐오가 반대하는 책이라면 평등의 필독서가 아닐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해당 도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책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문의 | 010 4132 1413

- 2차 책담회
 - “우리는 다르게 태어나거나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고귀하게 여겨야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이지요.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답니다.”(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 누군가의 몸에 그 몸의 주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말을 하는 것을 성희롱이라 하고, 강제로 원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성추행/성폭행, 이 모두를 성폭력이라 일컫는다. 미투운동은 단순히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움직임이다.
 -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성폭력 의제를 보수화하는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공격과 잇달아 있다.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구도의 핵심에는 남성의 성욕을 성폭력의 발생원인으로 짚고, 이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행실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조언을 듣게 되는 이유가 된다.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해결에 대해 다른 설명을 펼쳐온 게 페미니즘. 성폭력의 핵심은 권력관계임을 밝혀내고 서로 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등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왔음. 또한 성폭력의 의미를 남성의 강압에 대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정조이데올로기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온 것도 페미니즘. 그러나 현재의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의 성과를 무화하는 퇴행이다.

- 개정교육과정에서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압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정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현재의 강간죄와 그 모델을 공유하는 것. 강간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는 피해자에게만 저항 여부를 묻게 만들고 있다.
- 섹슈얼리티와 성적 자기결정권 모두 특정 성행위가 아닌 나의 정체성, 관계, 사회적 소속과 관련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권력구조의 문제임을 제대로 드러내야 해결에 대한 모색도 가능함. 페미니즘, 반성폭력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언어를 만들어오고 운동을 해왔고, 이는 페미니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다학연이 문제라며 제시한 ‘남자아이를 위한 강간예방법’은 스웨덴의 한 정당에서 만든 것으로, 모든 여자아이들이 마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이나 몸가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성폭행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조언을 듣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여자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제한받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미러링이었음을 소개.
- 성폭력을 좁게 보는 법과 문화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이 제시하는 적극적 합의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소개. yes or no를 넘어서는, 폭력이나 위협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성적 즐거움을 목표로 두 사람이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추상적인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것으로 다섯 가지 원칙. (명시적으로/의식이 있을 때/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평등하게/모든 과정에서 항상)

- 7월 8일. '도서관 성평등 도서 폐기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초안이 충남차제연으로 전달되었음.
- 7월 11일. 서명운동(안)을 비롯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충남차제연 임시집행위원회 개최. 회의에서 성평등 도서를 폐기하라는 움직임을 비판하고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제안하고 개최하기로 하고,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한 관계자 면담을 7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함.
- 7월 17일. 도서관 관계자들 면담. 5월부터 시작된 공문, 방문, 전화 등 괴롭힘 상황을 알게 되었음.

[면담 요지]

- 5월 초부터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 도서관으로 '꿈키움연구소성장연구소' 등 단체의 공문이 발송되었음.
- 공문 내용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위배되는 성평등과 성교육 관련 도서를 빼라는 것.
-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특정 책의 폐기는 불가함을 알리자 소란과 지속적인 전화 등 괴롭힘이 이어졌음.

[도서관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전화는 충남지역만이 아니라 대전 등 전국에서 왔음.
- 괴롭힘에 견디다 책들을 서가에서 빼어 이동시킴. 충남도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해당 책들이 서가에 없거나, 장기 대출 중인 상황이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비슷한 상황임.
- 꿈키움성장연구소 등의 단체는 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충남도의원 모두에게 보냈다고 함.

- 7월 19일. 3차 책담회 개최.

6.21 7.5 7.19 (수) 8.2 8.16

* 본 책담회는 4회차까지 온라인중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회차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라는거지?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

오후 7:00 ~ 9:00

1. 발제1.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발제2. 외계인 소녀 원시인 소년
발제3. 생각이 크는 인문학 12. 성평등
발제4. 줄리의 그림자

2. 전문가와 의견 나누기 (호림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문의 | 010 4132 1413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다음세대물어는학부모연합(다학연)은 성평등과 성적 권리에 대한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려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평등과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혐오가 반대하는 책이라면 평등의 필독서가 아닐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해당 도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책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3차 책담회

- 자신의 다른 정체성을 고민하거나 성소수자로 이미 정체화 한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부모의 자녀,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또래의 동료 시민인 아동 청소년 모두에게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은 도서들은 중요한 의미. 등장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며 때로 지지자를 만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은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음.
- <우리가족은 행복해요!>는 성소수자 가족에게도 의미 있음. 이미 한국에도 가족을 꾸리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 가족들이 있음. 가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책들은 부모가 성소수자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님. 이 책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비성소수자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나와 동료시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기도 함.
- 다학연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책이 주는 위로와 공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음. 맘에 안든다고 책을 빼라는 것은, 의식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정말 문제임.

- 7월 24일. 충남교육청으로 토론회 참여를 요청하는 충남차제연 공문 발송, 토론회 홍보 시작.
- 7월 24일. 충북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여 도서관들이 대한출판협회로 공문 발송한 것을 알게 되었음. 아래는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도서 목록.

[붙임1]

유해도서목록으로 작성된 민원제기 대상도서

* 2. 『10대를 위한 빨간책』의 경우 완전저지사항을 기술하지 않은 채 목록이 작성되어 제출된 바, 동일서명의 2권 모두를 목록에 제시함.

* 형광펜으로 처리된 도서의 경우 2020년 논란이 되었던 나다운선정도서임.

NO	목록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1	10대들을 위한 성교육	수잔 매리디스 (지은이), 박영민 (옮긴이)	세움출판	2007
2	10대를 위한 빨간책	마갈리 플로즈네르 (지은이), 차크 아잠 (그림), 오경선 (옮긴이)	개마고원	2014
		보단 안데르센, 소현 한센, 제스퍼 젠센 지음, 옮긴이: 목수정	레디앙	2016
3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변해정 (위은이),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유색인)	동녘	2010
4	Being a boy 소년이 된다는 것	제임스 도슨 (지은이), 스파이크 제럴 (그림), 윙미정 (옮긴이)	봄나무	2017
5	Being a girl 소녀가 된다는 것	해일리 롱 (지은이), 켈마 코렐 (그림), 김인경 (옮긴이)	봄나무	2016
6	for Girl, for Boy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 지식	엘렌 코엔 지음 ; 박진희 옮김	생각의집	2020
7	Girls talk: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 주지 않는 것들	이다 글·그림	시공주니어	2019
8	가슴이 궁금한 너에게	유미 스타인스, 텔리사 캉 (지은이)	다산이야기	2022
9	걸 스토리 '나: 첫 생리 이야기	빅 파커 (지은이), 박주희 (그림), 박준규 (옮긴이)	올파소	2006
10	고마워 성, 반가워 사춘기 열흘간 떠나는 행복한 성교육 여행	정미금 (지은이), 황미선 (그림)	한솔수북	2008
11	구성애 아줌마의 뉴초딩 아우성	구성애 (지은이), 리갤러리 (그림)	울리브(M&B)	2011
12	꽃할머니	권윤덕 글·그림	사계절	2010
13	나는 반대합니다	데비 레비 글 ; 엘리자베스 베들리 그림 ; 양진희 옮김	함께자람·교회사	2017
14	나다운게 뭐야?	미리옹 말 (지은이), 김자연 (옮긴이)	리임	2022
15	나도 엄마 배 속에 있었어요?	다그마가이슬러글·그림; 김시형 옮김	풀빛	2012
16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크리스티나 드 워타 (지은이), 김인경 (옮긴이)	리듬문고	2019
17	나의 젠더 정체성은 무엇일까?	테레사 손 글 ; 노아 그리그니 그림 ; 조고은 옮김	보물창고	2020
18	나의 첫 젠더 수업	김고연주 (지은이)	정비	2017
19	난 어떻게 태어났을까?	피터 메일 (지은이), 아서 로벤스 (그림), 김민화 (옮긴이)	서둘	2006
20	남자 여자가 바뀌면 좋겠어!	김선영 (지은이), 이은지 (그림)	키위북스(어린이)	2020
21	누가 진짜 엄마야	버나뎃 그린 글 ; 예나 조벨 그림 ; 노지양 옮김	원더박스	2021
22	니몸, 네맘 얼마나 아니?	배정원 (지은이), 최해영 (그림)	팜파스	2015
23	다른게 틀린건 아니잖아?	류은숙 (지은이), 원혜진 (그림)	양철북	2015
24	달라도 친구	허은미 글 ; 정현자 그림	웅진주니어	2010/2021

25	돌직구 성교육	제인 폰다 (지은이),나선숙 (옮긴이)	예문아카이브	2016
26	동이가 서툰 너에게	유미 스타인스,멜리사 칸 (지은이),제니 래섬 (그림),이정희 (옮긴이)	다산어린이	2021
27	따로 따로 행복하게	베벳 콜 (지은이)	보림	1999
28	딸 인권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글 ; 에스텔 비용-스파 놀 그림 ;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29	루나레나의 비밀 편지	안명옥, 황미나 지음	책과이음	2005/2020
30	루카-루카	구드룬 맵스 ; 미하엘 쇼버 그림 ; 김경연 옮김	풀빛	2020
31	모더니타	모데르나 데 푸에블로 (지은이),최하늘 (옮긴이)	춘희네책방	2022
32	불평등과싸우는여성대법관루스베이더긴즈버그	조너 윈터 글 ; 스테이시 이너스트 그림 ; 차익중 옮김	두레아이들	2018
33	빨강은 아름다워	루시아 자울로 글·그림 ; 김경연 옮김	사계절	2021
34	사랑에 빠진 알콩이와 달콩이	실비 지라르데 글 ; 푸이그 로사도 그림 ; 이효숙 옮김	초록개구리	2015
35	사랑을 나누면 무슨 일이 생길까?	크리스티안 베르두 (지은이),조의행 (옮긴이)	다섯수레	2004
36	니 몸, 네 맘 얼마나 아냐? 사실 십대가 진짜 알고 싶었던 솔직한 성 이야기	배정원 (지은이),최해영 (그림)	팜파스	2015
37	사춘기 내 몸 사용설명서	안트예 헬름스 글 ; 안 폰 홀레벤 사진 ; 박종대 옮김	조선Books:조선에듀케이션	2014
38	사춘기 성장 비밀	재키 배일리 (지은이),세라 네일러 (그림)	미래엔아이세움	2009
39	생각이 크는 인문학·성평등	김윤경글; 이진아 그림	울파스	2016
40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유미 스타인스 ; 멜리사 칸 [공]글 ; 제니 래섬 그림 ; 김선희 옮김	다산어린이	2019/2021
41	서연이의 페미니즘 다이어리	김고연주 지음 ; 김다정 그림	청어람아이	2020
42	성 역할과 성 평등 사회는 쉽다	신혜진 (지은이),홍지혜 (그림)	비룡소	2020/2022
43	성 터놓고 얘기해요	로비 H. 해리스 ; 마이클 엠벌리 그림 ; 주은희 번역	다섯수레	2003
44	성교육을 부탁해	이영란 글 ; 강효숙 그림	풀과바람	2016
45	성평등	정수임 지음 ; 홍지연 그림	서유재	2020
46	성평등이 뭐예요?	제랄딘 맹상 글 ; 하프밤 그림 ; 이정주 옮김	개암나무	2018
47	세상을 바꾼 아주 멋진 여성들	케이트 팅크허스트 글·그림 ; 니모 옮김	머스트비	2017
48	세상의모든가족	알렉산드라 막사이너 글 ; 양케 콜 그림 ; 김원균 옮김	푸른솔주니어	2014
49	세상의 모든 가족을 위한 그림책,가족 백과사전	메리 호프만 (지은이),로스 에스퀴스 (그림),신애라,차정민 (옮긴이)	밝은미래	2010

50	소녀 몸 교과서	윤정원,김민지 (지은이),홍화정 (그림)	우리학교	2021
51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정희진,김고연주,박선영,윤이나,이유나,김애라,김홍미리,문미정,김주희,최은영,하정옥,장이정수 (지은이)	우리학교	2017
52	소녀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소냐 르네 테일러 (지은이),김정은 (옮긴이)	휴머니스트	2019
53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	윤은주 글 ; 이해정 그림	사계절	2019
54	소년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스콧 토드넘 지음 ; 김정은 옮김	휴머니스트	2020
55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일로나 아인볼트 (지은이),바바라 융 (그림),마정현 (옮긴이)	위즈덤하우스	2020
56	소년의 성 보이툰	최황 (지은이),홍승우 (그림)	동아일보사	2006
57	솔직히말해주세요	에지오 아체티,알베르타 로텔리아 (지은이),비토리오 세디니 (그림),강경화 (옮긴이)	서광사	2004
58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조르지아 베헤리 글 ; 마시말리아노 디 라우로 그림 ; 이승수 옮김	머스트비	2016
59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	이명화,양윤경 (글),최정인 (그림)	가나출판사	2014
60	십대들의 성장 다이어리 -소녀편-	에이미 마들먼,케이트 파이퍼 (지은이)	시그마북스	2009
61	십대들의 성장 다이어리 -소년편-	에이미 마들먼,케이트 파이퍼 (지은이),김봉년 (옮긴이)	시그마북스	2009
62	아기는 HOW 어떻게 태어났어요?	안나 피스케 (지은이),군자출판사 학술국 (옮긴이)	군자출판사 (교재)	2021
63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페르 홀름 크누센 지음 ; 정주혜 옮김	담푸스	2017
64	아들 인권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글 ; 에스텔 비용-스파블 그림 ;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65	아름다운 탄생	아네스 로젠스티엘 글·그림 ; 손수정 옮김	걸음동무	2014
66	아빠 인권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글 ; 에스텔 비용-스파블 그림 ;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67	아빠는 페미니스트	론다 리트 지음 ; 매건 워커 그림 ; 손영인 옮김	봄나무·한즈미디어	2018
68	아우성 빨간책 남자 청소년편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지은이)	올리브엠비(주)	2017
69	아우성빨간책여자청소년편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지은이)	올리브엠비(주)	2018
70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	마르기트 미터 (지은이)	에디터	2007
71	아이에서 어른으로 나 이제 남자야?	누리아 로카 (지은이),마르타 파브레가 (그림),박세형 (옮긴이)	청어람주니어	2007
72	아이에서 어른으로 나 이제 여자야?	누리아 로카 (지은이),메릿셀 리베스 (그림),박세형 (옮긴이)	청어람주니어	2007
73	아홉 살 성교육 사전 남자아이 마음	손경이 지음 ; 방인영 그림	다산에듀·다산북스	2020
74	아홉 살 성교육 사전 남자아이 몸	손경이 지음 ; 방인영 그림	다산에듀·다산북스	2020

75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여자아이 마음	손경이 지음 ; 원정민 그림	다산에듀	2020
76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여자아이 몸	손경이 지음 ; 원정민 그림	다산에듀;다산북스	2020
77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	강남순 글 ; 백두리 ; 허지영 [공]그림	동녘주니어	2018
78	안녕 내 친구는 페미니즘이야	강남순 글 ; 백두리 ; 이미주 [공]그림	동녘주니어	2020
79	안녕, 나의 사춘기	안치현 (지은이),손수정 (그림)	미래연아이세움	2020
80	안녕, 생리야	첼라 퀸트 글 ; 조바나 메데이로스 그림 ; 김정은 옮김	파스텔하우스	2022
81	알수록 신기한 과학 이야기 성교육	쿨린 바라스 (지은이),이다운 (옮긴이)	타임북스	2018
82	어린이 양성평등 이야기	권인숙 지음 ; 민재희 그림	청년사	2008
83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초등성평등연구회 지음 ; 이해정 그림	우리학교	2018
84	어린이가 궁금한 성 이야기- 내 몸이 궁금해	강순애 (글),iwi (그림),김영주 (감수),손재수 (구성)	대교북스주니어	2012
85	어린이가 궁금한 성 이야기- 내 성은 건강해	구성애,김대식,방명걸 (지은이),iwi (그림)	대교북스주니어	2012
86	어린이를 위한 성평등 교과서	스테파니 뒤발,상드라 라부카리 (지은이), 파스칼 르메트르 (그림)	라임	2020
87	어린이를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신현경 글 ; 이갑규 그림	해와나무	2012
88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사샤 뷔레그렌 글 ; 열린 린델 그림 ; 김 아영 옮김	풀빛	2018
89	엄마 인권선언	멜리자베스 브라미 글 ; 에스텔 비용-스파 놀 그림 ;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90	엄마씨앗 아빠씨앗	티에리 르낭 글 ; 세르주 블로크 그림 ; 권순영 옮김	파랑새	2016
91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나카야마 치나쓰 글 ; 야마시타 유조 그림 ; 고향옥 옮김	고래이야기	2018
92	여자 사전	니나 브로크만,엘렌 스토켄 달 (지은이),망 힐 비스네스 (그림)	초록서재	2021
93	여자? 남자? 같은 것 다른 것 성과 양성 평등	안현진 (지은이),오정민 (그림)	뽕치	2021
94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플란탈 팀 (지은이),루시 구티에레스 (그 림)	풀빛	2017
95	열네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몸과 마음	유현진,이승환 (지은이),이세린 (그림)	맑은샘(김양수)	2022
96	열두달 성평등 교실	초등전터교육연구회 아웃박스 (지은이), 정재윤 (그림)	파란자전거	2021
97	외계인 소녀, 원시인 소년	프랑수아즈 부세 글;그림 ; 최성웅 옮김	파란자전거	2015
98	우리 여자도 할 수 있어요	소피 구리옹 글 ; 이자벨 마로제 그림 ; 김미리 옮김	이숲	2019
99	우리 할머니는 페미니스트	이향 글 ; 김윤정 그림	아르볼;지학사;아르 볼;지학사;아르볼;지 학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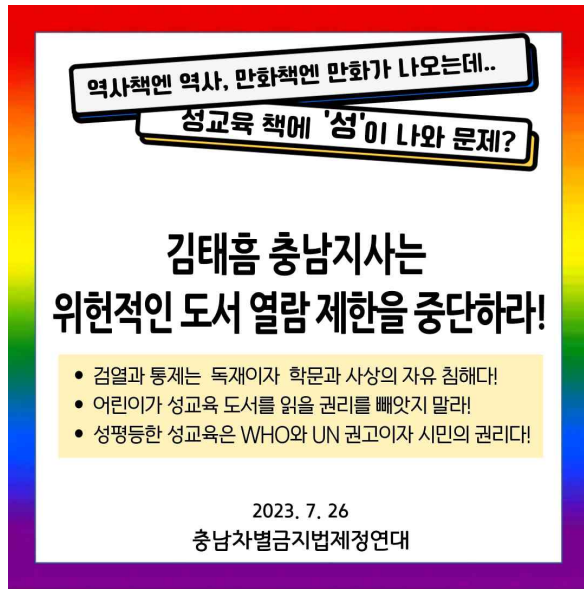
100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메리 호프만 글 ; 로스 애스퀴스 그림 ; 이미애 옮김	내인생의책	2017
101	유니세프가 들려주는 어린이 권리	제라르 도텔 글 ; 루이즈 와젤 그림 ; 곽노경 옮김	개암나무	2014
102	이상해? 다양해!	아들리에실험실지움 ; 김경연 옮김	풀빛	2018
103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페르닐라 스탈멜트 글·그림 ; 이미옥 옮김	시금치	2016
104	줄리의 그림자	크리스티앙 브뤼엘 글 ; 안 보졸렉 그림 ; 박재연 옮김	이마주	2019
105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평등수업	소피 뒤소수와 글 ; 자크 아잠 그림 ; 권지현 옮김	다림	2019
106	착한 사회를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소녀 소년 평등 탐구생활	양해경 (지은이), 권송이 (그림)	파란자전거	2013
107	청소년 빨간 인문학	키라 버몬드 (지은이), 정용숙 (옮긴이)	내인생의책	2014
108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이혜진 (지은이)	파라주니어 (=파라박스)	2009/2016
109	초등학생을 위한 똑똑한 좋은뉴스	라슈미 시르데슈판드 (지은이), 이하영 (옮긴이)	솔빛길	2022
110	초보자를 위한 페미니즘	누리아 바렐라 (지은이), 안토니아 산톨라야 (그림)	시대의창	2020
111	최달수 선생님의 마법의 성	최달수	김영사	2002
112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아 블루머!	새너 코리 지음 ; 체슬리 맥라렌 그림 ; 김서정 옮김	아이세움	2003
113	꽃수염 공주	에브 마리 로브리오 글 ; 오렐리 그랑 그림 ; 박재연 옮김	토끼섬	2022
114	파랑 여자 분홍 남자	김경옥 (지은이), 홍찬주 (그림)	내일을여는책	2021
115	평화의 소녀상	윤문영·글·그림 ; 이윤진 영문	내인생의책	2015/2020
116	함께 살 사람을 고를 수 있다면	서보현 (지은이), 우지현 (그림)	우리학교	2022
117	행복한 사춘기를 위한 넓고 깊은 성지식 성교육 상식 사전	'인간과 성' 교육연구소 (지은이), 다카야나 기 미치코 (역은이), 남동윤 (그림), 김정화 (옮긴이)	길벗스쿨	2015

- 7월 25일. 충남도의회. 지민규도원이 어린이 유해도서 문제 발언하자 김태흠지사는 열람을 제한하겠다 발언.
- 7월 25일 한겨레신문 보도. “보수 학부모들, 인권 117권 금서 요청...‘위안부’ 그림책도”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1571.html?_fr=mt2&fbclid=IwAR17r1RTyz15xPyaH35ZNN1Pu9Pqjvskblnq2I9OPMCKaFg78ThVMNq0OCc

- 7월 25일 경향신문 보도. “성교육 책 빼라고! 학부모단체 집요한 민원·도지사 맞장구에 ‘백기’ 든 도서관”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8522>

- 7월 26일. 충남차제연 비판 논평 발표.



**성교육 도서 금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위반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성평등 도서 열람 제한 발언을 규탄한다.**

1. 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책을 읽을 권리를 보장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시민의 도서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5조.”

2.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 아동청소년이 성교육도서에 접근할 권리를 막는 것은 유엔사회권조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위반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2016). C. 핵심 의무사항.

49. 당사국들은 최소한 필수적인 수준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현대의 인권문서 및 사법권의 지침, 그리고 특히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구기금과 같은 유엔기구들이 설립한 가장 최근의 국제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이 핵심의무사항들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f)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차별적이지 않고, 편견이 없고, 근거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하는 역량을 고려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정보로 접근을 보장할 것;”

3.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나 특히 정치인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시대착오적인 성(性) 관념과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차별적 인식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림돌이자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 김태흠지사와 일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지방의원에게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학습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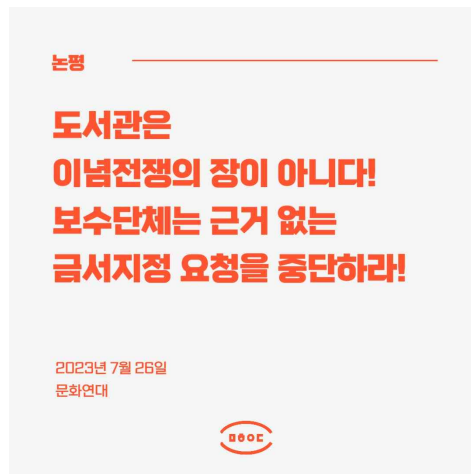
- 7월 26일. 오마이뉴스 보도. “나 학부모다, 성교육 책 빼라” 악성 민원 시달리는 공공도서관 “

<https://omn.kr/24y6q>

- 7월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도. ”금서지정 요청... 도서관 마비시킨 학부모 단체 - 황두영작가“

https://youtu.be/hYg_UAvjpfE

- 7월 26일. 문화연대 논평 발표.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보수단체는 근거 없는 금서 지정 요청을 중단하라!

보수 성향의 민간 단체들이 인권·평화·성교육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이 “유해 도서”라며 공공도서관 등에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제기한 도서출판물 117종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뢰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보수단체들이 지적한 도서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개별 도서관 등에 반복된 민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민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토론과 협의보다는 자기 생각만 옳다는 식의 폐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마저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에 불과하다.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된 책들을 살펴보면 젠더·성평등과 같은 인권을 주제로 하거나,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 관련 도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들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내용들이라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유해 도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한 책들을 유해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이들 도서들이 금지도서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 온 제도이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규제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특정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데 적절한 방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볼모로 한 보수 진영의 이념 논쟁 프레임에 불과하다. 진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를 원한다면 검열과 규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특정 도서와 도서관에 대한 마녀사냥식 논쟁 방식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자신들은 민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책들을 편견 없이 읽고 나누는 지식의 공간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지적 탐구의 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단체들의 근거 없는 금서 도서 지정 요청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도서관을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라!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 7월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입장문 발표. 보도.
[“도서관에 출판물 대출금지·폐기 요구는 기본권 침해” | KBS 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 "문제가 제기된 도서들은 도서관의 전문 인력인 사서들에 의해 선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없이 전국의 도서관에서 대출되고 있는 도서로서 사회적 공동의 가치와 유익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서관과 사서는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기반해 개인의 사상과 편견을 배제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도서를 선정한다"면서, "해당 도서들을 유해도서라 명하고 접근을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도서관과 사서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협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하여 국민주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일, 특정 출판물이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표현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우리 사회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문화적 특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문화적 권리 보호와 차별시정, 인식제고 등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특정 분야의 도서를 제한한다는 것은 문화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협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개인에 대한 존엄과 권리,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낙인과 검열을 중단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한 걸음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이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도서 제공의 의무와 권한을 가진 도서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 민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인용)

- 7월 28일. 대전MBC 라디오 <시대공감>에서 관련 사항으로 충남차제연 활동가 전화 인터뷰
<https://youtu.be/f0qZsgNXNnE>
- 7월 28일. 오마이뉴스 보도. '성교육책 빼' 민원에 출판협회 "자기검열 강요행위 중단하라"
<https://omn.kr/24z8o>
- 7월 30일. 경향신문 보도. "이 책을 왜 도서관에서 없애란 거죠?" 금서 찾아 읽는 사람들
<https://v.daum.net/v/20230730102831609>
- 7월 31일. 대전KBS 라디오 대세남 집중 인터뷰에 충남차제연 활동가 출연.

2. 충남교육청 도서관별 해당 도서 현황¹⁾

• 검색 도서 목록

순번	서명	저자	발행인	발행년
1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핑이!	에스텔 비용 스파놀 글.그림, 조정훈 옮김	키즈엠	2014
2	아빠 인권 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지음, 에스텔 비용 스파놀 그림,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3	엄마 인권 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지음, 에스텔 비용 스파놀 그림,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4	아들 인권 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지음, 에스텔 비용 스파놀 그림,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5	딸 인권 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지음, 에스텔 비용 스파놀 그림,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6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나카야마 치나쓰 지음, 아마시타 유조 그림, 고향옥 옮김	고래이야기	2018
7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피오나 커토스커스 지음, 이승숙 옮김	고래가슴 쉬는도서관	2018
8	Girl's Talk 걸스토크	이다 지음	시공주니어	2019
9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페르 홀름 크누센 지음, 정주혜 옮김	담푸트	2017
10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페르닐라 스탈펠트 글.그림, 이미옥 옮김	시금치	2016

[표1. 2020년 여가부가 회수한 ‘나다움’ 어린이책 7종, 10권 목록]

1) 7월 25일 현재 도서관 누리집과 전화통화로 ‘충남차제연’이 조사함.

• 검색 결과

도서관	도서 현황	도서 검색	도서 열람	도서 위치	비고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 주 도 서 관		0	0	아동, 유아자료실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홍 성 도 서 관		0	0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예 산 도 서 관		0	0	아동자료실	3, 4, 5번 소장 나머지 7권 미소장
충청남도교육청 서 부 평 생 교 육 원		0	×	아동자료실	휴관. 도서 대출 및 열람 불가능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청 양 도 서 관		0	X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아 산 도 서 관		0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해 미 도 서 관		×	×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금 산 도 서 관		×	×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서 천 도 서 관		0	0	보존서고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성 환 도 서 관		×	×		
충청남도교육청 학 생 교 육 문 화 원		×	×	×	해당도서 미소장
충청남도교육청 남 부 평 생 교 육 원		×	×	×	해당도서 미소장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유 구 도 서 관		×	×	×	해당도서 미소장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웅 천 도 서 관		×	×	×	해당도서 미소장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부 여 도 서 관		×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태 안 도 서 관		×	×		
충청남도교육청 평 생 교 육 원		0	0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보 령 도 서 관		×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당 진 도 서 관		0	×		대출 및 예약 불가

[표2.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 대상 '표1 도서' 검색 결과]

퇴행하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6~2017년 촛불 당시부터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국면까지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슬로건은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압축하는 선언이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진단 속에 등장한 촛불은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성평등’을 빼놓고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계기였다. 2018년 #미투 운동과 함께 폭발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달라진 우리는 당신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선언,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등장한 ‘이제 우리는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 모두 마찬가지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가 ‘누구의’ 민주주의였는지를 질문함과 함과 동시에 기존 민주주의 질서를 성평등이라는 지향과 관점 하에서 새롭게 갱신 혹은 재구성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우리에게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운동(2017), 21만명이 참여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와대 청원(2018), #스쿨미투(2018) 흐름은 여성·성/소수자·청소년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

“민주주의 완성은 조레나 법률에 있지 않다. 실제로 평등이 얼마나 실천되느냐에 달려 있다.”²⁾

성평등의 ‘제도화’가 아니라 성평등의 ‘실천’ 정도에 따라 성평등 민주주의가 가능될 수 있다는 김지철 충남 교육감의 지적은 정확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세력에 대응하는 실천은 성평등과도 민주주의와도 ‘별개’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페미니즘 세력과 같은 논리로 성평등 도서를 문제 삼는 지방의회 의원(지민규 도의원)과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지자체장(김태흠 충남지사)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도 ‘내부 논의 중’이라거나, ‘의견 수렴 후 성교육 관련 도서 구입 시 참고’하겠다고는 말로 중립기어 정치를 실천할 뿐이다.

성평등 도서 배제 요구, ‘학부모 단체’의 민원이라는 허울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가 검열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2020년 나다움어린이책(이하 나다움책) 회수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분학연),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등 이른바 ‘혐오선동세력’이 나다움책을 ‘포르노 같은 동화책’으로 낙인찍자 국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2) 「김지철 “성평등, 민주주의 완성 위해 필수”, 『디트NEWS24』, 2021년 3월 8일자.

나서 ‘조기성애화 우려’, ‘동성애 조장.미화’를 이유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질타하고, 다음날 여성가족부가 나다움책 회수를 발표했다. 2023년 충남에서도 성평등 도서는 비슷한 운명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다학연)이 ‘우리 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라는 전단지 배포하고,³⁾ 꿈키움성장연구소가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완전 배제를 요구하며 성평등 도서를 빼라는 집요한 민원을 제기하자 군의원과의 의원까지 이에 가세한 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에서 나다움책 7종의 열람을 제한했다.

하지만 2023년 충남에서 다시 나다움책이 열람을 제한당하고 150여 권에 이르는 책들이 ‘불온한’ 성교육.성평등 도서로 지목당한 상황은 단순히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의 민원으로 국한해서 보기 힘들다.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꿈키움성장연구소, 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다학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우학연) 등 학부모단체들은 현재 충남도의회에 폐지 청구안이 올라가 있는 충남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단체들이다. 낙태죄 폐지 이후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요구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하는 입장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에도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의 최선전에 이른바 ‘혐오선동세력’으로 불리는 보수개신교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낮설지 않다. 보수개신교는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⁴⁾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반동성애 운동(Anti-Homosexuality Movement) 세력으로 등장했으며,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 혹은 ‘동성애 확산법’으로 왜곡해왔다. 학생인권조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나 생활동반자법안 등이 ‘미니 차별금지법’ 혹은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버전’으로 불리는 이유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종교연구자들은 1980년대 말 보수개신교가 “성속이원론-성교 분리론이라는 외투마저 벗어던지고 직접적인 사회참여.정치참여 노선으로 선회”⁵⁾한 이후, 2000년대 즈음부터 개신교의 사회적 공신력이 하락하고 교세가 침체되는 등 위기를 겪자 동성애 혐오 정치를 개신교 내부 결집을 위해 동원.활용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다.⁶⁾ 강인철의 지적처럼 보수개신교가 동성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영적 전쟁 프레임에 기초한 타자(동성애자)의 비인간화’로 압축되는데, 이 배경에는 또 하나의 위기가 지리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⁷⁾라 말하는 것처럼 동성혼 제도화로 인해 미국도 실

3) 지난 5월 경 다학연은 ‘우리 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학부모들이 공공도서관에 민원을 넣어 ‘성평등 도서’를 빼도록 선동하고, 공공도서관에도 이 유인물을 비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차제연과 충남차제연은 이러한 유인물이 충남 지역 내에서 배포되지 않도록 공동대응을 해왔다.

4)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학력, 병력(病曆),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까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다. ‘동성애 확산’을 이유로 ‘성적 지향’ 삭제를 요구한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5) 강인철, 박노자(2016), 「한국 종교의 보수성을 어떻게 볼까 - 개신교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44(1), 403.

6) 윤신일과 오세일은 정치·사회참여 방식을 통해 나타난 개신교 근본주의의 특징이 ‘속’으로 규정한 영역 및 대상에 대한 반대와 혐오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논증하며 ‘반세속화(anti-secularization)’로 명명한다. 그리고 보수주의 교단일 수록, 근본주의 교단일 수록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이라는 4대 혐오 대상을 배경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적 경향이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윤신일, 오세일(2021), 「한국 근본주의 개신교인의 ‘4대 혐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5(1), 39-88 참조.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최근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 물결로 레드(공산주의), 블랙(이슬람), 레인보우(동성애)를 언급한 바 있다.

7)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상임고문 최흥준 목사)·홀리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 「보수 개신교 단체, 또 탈동성애 축제」, 『뉴스앤조이』, 2015년 5월 8일자.

패한 '동성애 문제', 즉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막아내는 것을 한국교회의 '몹'으로 보고 있다.

반(反)동성애와 함께 반(反)페미니즘의 선두에 선 보수개신교

하지만 보수개신교가 스스로의 전선을 “동성애·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좌파'와의 싸움”으로 의미화하게 된 배경, 전통적인 반(反)동성애와 함께 노골적인 (反)페미니즘을 본격화한 배경에는 젠더(gender) 정치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있다. 혹자는 보수개신교가 새로운 전략으로 종교색을 지우며 페미니즘이라는 외피를 쓰고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보기도 했지만(제주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는 보수개신교와 일부 여성대중들이 ‘국민-여성이 먼저’라는 이념으로 조우하기도 했다), 이숙진은 보수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정치의 뿌리에 “정상가족의 해체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상가족 복원기획”이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⁸⁾

최근 보수개신교 세력이 ‘성혁명 쓰나미’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제는 1) 차별금지법(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 역차별), 2) 학생인권조례(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육 봉쇄), 그리고 3) ‘동성혼합법화 3법’이 있다. 이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으로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혼출산지원법(무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이 포함된다.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보수개신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3법을 극렬하게 반대한다.⁹⁾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sex)에 기초해 혼인과 가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3법과 동성애를 확산·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교육 비판을 가로막는 학생인권조례는 보수개신교의 ‘영적 전쟁 프레임’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붕괴키는 위협 요소이다. 보수개신교 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를 둘러싸고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구호를 외치며 인권화 된 대립구도를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0년 8월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척결 과제로 내세운 ‘바른여성인권연합’의 출범은 다양성, 공존,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라는 ‘문제적 성’을 포괄하려는 ‘포괄적 성교육’을 정확하게 겨냥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결국 낙태와 피임을 권장하는 것으로 출생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이는 가족붕괴, 인구감소, 인류 위기의 원인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강조는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를 무시하며 동성애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로 등장한다.) 이숙진은 보수개신교가 동성애를 근대 핵가족·정상가족 질서를 파괴하는 타자로 등장시키면서(타자화), 정상가족의 유지와 강화에 필수적인 주체를 재생산하는(주체화) 전략을 통해 젠더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와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에 근거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고 본다. 바른여성인권연합이 가족을 파괴하는 주체로 여성가족부를 지목하며 폐지 운동에 나서고 ‘다시 가정으로’ 캠페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등을 진행하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타자화외 주체화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이는 ‘가족 가치’를 강조하며 레이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한 미국 보수개신교 우파의 역사, 그리고 ‘교육 수호 학부모회(Parents

8) 이숙진(2022), 「한국 개신교의 정상가족 만들기 - 타자화와 주체화 전략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82(1), 87-112.

9) 헌법 제36조 1항 ‘양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류민희, 「법정을 넘어서 - 동성결혼소송과 법적 쟁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15년 8월 3일자 중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의 평등’ 문언이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지 여부”

Defending Education)'와 '교육에서 좌회전 금지(No Left Turn in Education)'로 대표되는 현재의 학부모 정체성을 내세운 우익 운동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보수개신교는 '우익 여성 대중운동'을 필두로 '양성평등 YES'를 통해 때로는 페미니즘의 외피를 쓰며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때로는 '성평등 NO'를 통해 정상가족이라는 사회질서를 복원하려는 대항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2020년 나다움책 사태 이전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조례안에 있지도 않은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라고 압박하며 경험을 쌓은 '구리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¹⁰⁾은 ('우리 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 유인물에 따르면) 구리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를 제외하는데도 성공하고, 올해 구리시 '책의 날' 행사에 동네서점 및 도서관들과 참여단체로 나란히 어깨를 함께 했다. 다른 자치체 행정/관료로부터 쌓은 성공의 경험이 다시 충남을 '성평등 NO'라는 이념의 전장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보수개신교의 '반페미니즘-반동성애' 주장에 정치권이 호응하며 이를 제도 정치 내에서 실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수개신교와 교감, 동행하는 제도 정치

충남 성평등 도서 배제 사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자체에서 '성평등'에 대한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수개신교 혐오선동세력이 아니라 지방의회 정치인들이 서 있다. 올해 1월 경기도 서성란 도의원(국민의힘)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5월에는 홍성우 울산시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이 “페미니즘, 동성애 옹호, 쿼어축제 등 성적으로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편향된 교육”을 문제삼으며 교육당국의 목인을 질타했다. 정규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들이 젠더 교육, 동성애 교육을 한다’는 민원을 거론하며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의 자문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모두 올해, 최근에 벌어진 일이다.

반페미니즘 세력이 여성정책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치활동이 증가했을 때 행정 관료들의 행위와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백미록은 여성정책 후퇴의 부분적 요인으로 작동하는 행정 관료들의 ‘젠더 적대’가 “반페미니즘과 동일한 언어로” 여성정책을 공격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뚜렷한 양상으로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¹¹⁾ 행정 관료는 아니지만 위 연구에 비추어 우리는 지방의회 정치인들의 양상 또한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전제로 하는 성은 여성과 남성 두 가지이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주장하는 평등으로서의 성평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행 법체계와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의 평등을 위한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오해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¹²⁾

10) 「[성교육 전쟁①] '조직적 항의 폭탄' 반동성애 진영 타깃 된 '청소년성문화센터'」, 『뉴스앤조이』, 2019년 12월 19일자.

11) 백미록(202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후퇴 과정 분석」, 『한국여성학』 39(2), 171-201.

양성평등을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성소수자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 '양성평등 YES vs 성평등 NO' 대립구도를 내세우는 보수개신교의 대표적인 주장과 시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다움책 낙인찍기와 회수에 앞장섰던 정치인의 주장¹³⁾, 지방의회 의원들의 논리가 일말의 차이도 없이 닮아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사회 제도정치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보수개신교 우파에 동조하는 일탈적인 보수 정치인의 현실이 아니라,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평등'에 갇힌 한국사회 정치의 역사에 노정된 현실이다.

성적 차이, 갈등과 논쟁을 우회하는 정치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었으나, 오랜 시간 '성평등기본법 vs 여성정책기본법 vs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안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법의 목적과 '성별' 범위가 이원적인 젠더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⁴⁾

○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교육 표준안은 구시대적인 성차별로 점철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1년 뒤 교육부가 개최한 공청회에는 반동성애 단체 인사들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성적 지향' 용어 사용이 금지되고 성소수자 인권 관련한 내용이 전면 삭제된 성교육 표준안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멈춰 서 있었으며, 2022년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성소수자', '재생산', '섹슈얼리티'와 더불어 '성평등' 용어가 삭제되었다. 현재 2022년 교육과정은 보수개신교 학부모 단체들이 '성평등 도서 배제'의 근거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 2015년 6월 '대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성평등 정책으로서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포함하며 제정되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성평등 조례가 기본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면 개정 요청했고, 결국 3개월여 만에 성소수자가 삭제된 양성평등 조례로 개정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왜곡과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이들이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를 외치며 꺾기대회를 열었다.

○ 2016년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을 "사회이슈 아닌 진리 지키기 위한 영적전쟁"으로 선포한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2017년 성평등 개헌 논의 국면에서 창립한 '동성애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성평등'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킴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용어라며 '양성평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개헌특위는 국민개헌토론회에서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를 옹호하기는 커녕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반동성애-반페미니즘 혐오선동세력을 달랐다.¹⁵⁾ 2017년 5월

12) 음선필(2022),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3(2), 88-89.

13)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장관까지 고발? 여가부 초등생 성평등 추천도서 '외설 논란' 일파만파」, 『신동아』, 2020년 9월 23일자 참조.

14) 나영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자료집, 2015년 11월 27일자, 31-42 참조.

15) 이진옥(2018), 「개헌의 젠더 트러블: 양성평등이 투쟁의 종착지가 된 성평등 개헌의 역설」, 『문화과학』 94, 147-175 참조.

문재인 촛불정부가 한기총에게 성적 지향이 포함된 '추가 (차별금지법)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 약속하며 출범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 2017년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양성평등'으로 위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보수개신교의 공격과 난동으로 파행에 이르렀다. "가정파괴 부추기는 여가부 해체하라", "젠더 교육 결사반대"가 주요 주장이었다. 직후 여성가족부는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혼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찬가지로 여성단체들의 비판과 반대에 직면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대립할 문제"가 아니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젠더 관점이 전체적으로 정책에 녹아들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한기총을 찾아가 성평등 정책이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을 해명했다.

○ 2019년 발의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성별'이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차별에는 동성애도 포함된다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다. 같은 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40명이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로 규정하며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젠더 자문관' 신설을 명시하려던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고, 경남도의회는 주민발의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으며, 한동대에서는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교내 동아리 학생들에게 무더기 부당 징계를 내렸으며, 연세대에서는 인권·젠더 강좌가 필수교양에서 철회되었다.

○ 2020년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분학연)의 선동은 나다움책 회수의 기반이 되었고, 2021년에는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한다며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이른바 '페미게이트'가 열렸다.

○ 2022년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서울시교육청에게 '편향적 젠더교육'을 강요한다며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극단적 페미니즘 교육 반대, 동성애 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폐지 등 반동성애-반페미니즘 공약을 통해 혐오선동 선거의 경쟁이 펼쳐졌다.

○ 2022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성가족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표에서 '성평등' 용어를 제외했다. 2023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체계상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는 익숙한 논리가 등장했다.

한국사회에서 불평등한 젠더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성평등 제도로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둘러싼 문제는 바로 '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여성정책으로서의 '성평등'이 거부되

었다는 점이다. 이는 위계화 된 성역할, 성별 지위, 성정체성, 성별 규범 등을 포괄하는 성차별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성평등 정치의 미래를 더욱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차별과 불평등을 발생·유지하는 구조에 대한 인식과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상향시킨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거나 평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발전’에서 ‘평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성별, 성정체성과 성적지향뿐만 아니라 계급, 출신 국가 및 인종, 장애 여부, 가족 형태 등 여성들의 삶에서 중첩·교차하는 속성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했다. 하지만 양성평등 개념이 채택되는 과정은 성별 불평등의 규명(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의 성별 불평등을 경험하는지 등)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문제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의 명칭이 양성평등으로 관철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별 불평등의 해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의 핵심 기반은 이분법적 젠더 규범이라는 점에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채택된 ‘양성평등’ 개념이 누구에게 어떤 평등을 실현해줄 것인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⁶⁾ 그리고 정부와 의회 정치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주장하는 반동성애-반페미니즘 보수개신교 세력에 의해 ‘성평등 도서’가 불온시되고 ‘성평등’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공공도서관에서 삭제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정책, 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성소수자라는 특정한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혐오선동세력과 정치에 의해 호출되는 한, 그 현실에 맞서기 위한 정치로서 ‘양성평등’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다음책 회수 사건 이후에도 다음복클럽이 이어지고 『오늘의 어린이책』 발간을 지속해온 것처럼,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우회하려는 양성평등 전략이 아니라 성평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싸워나가는 그 동력이 성평등을 진전시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n 민주주의가 아닌, 차별을 일깨우는 민주주의 정치

“학교는 여러 의견이 편견 없이 공평하게 논의되고 전달되는 “공론장”(公論場)이어야 한다.”¹⁷⁾

이제 보수개신교 세력은 개신교 이념을 정치의 장에 온전히 관철시키려는 전략보다,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활용해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 공론장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임윤경이 ‘권리주의(right-ism)’ 혹은 ‘민원주의(complaint-ism)’라고 지칭한 바대로, 성평등 도서 배제 민원처럼 1/n의 지분

16)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행한 다음 글 참조. 몽, 「'양성평등 YES'라는 구호의 진짜 문제점」, 『오마이뉴스』, 2019년 10월 25일자. <https://omn.kr/1lf76> ; 미류, 「'양성평등'과 이별하자」, 『오마이뉴스』, 2019년 10월 31일자. <https://omn.kr/1lh6w>

17) 장동민(2020),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전략」, 『생명과학』 28(3), 303.

을 가지고 성교육.양성평등에 대한 보수개신교의 관점을 공적 영역에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론장 구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배제는 ‘양심적 혐오표현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여러 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이’와 ‘다양성’과 ‘공존’이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정치적 갈등, 의미투쟁의 가시화, 서로 다른 현실인식이 부딪히는 과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들의 차이가 경합하는 과정,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지만, 그동안 ‘차이’가 공론장 안에서 권력에 따라 ‘차별’의 이유나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은 쉽게 잊혀진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차별의식과 편견을 앞세운 정치인과 이에 굴복한 원칙 없는 정부에 의해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를 빼앗긴 사건이라고 규정한다.”¹⁸⁾

나다움책 회수 사태 당시 이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빼앗긴 것으로 문제설정을 이동시켰던 청소년인권운동의 입장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공론장에서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누가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되는가, 어떤 차이가 가시화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공론장에 평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제한했다는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특정한 소수자를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문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국사회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기보다, 그저 다양한 집단들이 의견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차이’라는 말에서 권력관계가 삭제되고, ‘다양성’이 추상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징후다. 현재 충남교육감의 ‘의견수렴’은 바로 이러한 공론장 안에서 비난회피 정치로 수렴되기 쉽더라도, 우리가 제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책임의 정치를 요구할 것인가이다.

“이들(조직적으로 책을 검열하는 단체)의 목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유색인종 등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대화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책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읽을 책과 탐구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보호되는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 Caldwell-Stone, 전미도서관협회 지적 자유 사무소 소장¹⁹⁾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또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과 사서가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모든 주제를 다루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에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 전미도서관협회, 도서관

18) 6개 청소년인권운동단체, 「[논평] 우리는 평등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을 원한다 - ‘나다움어린이책’ 회수 사태, 교육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다.」, 2020년 9월 1일자.

1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eports record number of demands to censor library books and materials in 2022」, ALA(Americans Library Association) News, Wed, 03/22/2023.

<https://www.ala.org/news/press-releases/2023/03/record-book-bans-2022>

권리장전의 해석²⁰⁾

“지식이 동성애혐오 해소의 열쇠이다(Knowledge is the key to dispelling homophobia)”

- 미국 거버 하트 도서관(Gerber Hart Library)의 사명문²¹⁾

특정한 집단에 대한 권리를 박탈할 때 훼손되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다. 민주주의에서 반차별과 평등이 핵심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론장에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떤 주체 혹은 집단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왔는지를 성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반영하기 위한 공동체의 지난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은 개인의 의지나 선의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차별을 자연스러운 관행이나 상식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차별의 구조, 차별의 역사성과 시간성을 이해할 때 해소의 가능성이 열린다. 손쉬운 ‘성평등 도서’ 배제가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장소와 이해를 박탈당한 사람들로 부터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으로서 성평등 지식의 보편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현재 정치가 자임해야 하는 책임이다.

20) Interpretations of the Library Bill of Rights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interpretations>

21) 조금주(2015),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73.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안찬수(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대표/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하는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이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책이 유해도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주로 책, 독자, 도서관에 집중하여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첫 번째 질문,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지향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도서를 열람 제한, 제적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검열’(censorship)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검열이다”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 발제문의 참고자료1에 첨부하는 <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에서 자세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 글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제재’(prior restraint)에서 ‘자기검열’(self-censorship)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민간단체의 자체 심의 ②배제 목록 작성과 배포 ③언론을 통한 이슈 증폭 ④관계 당국의 행위 ⑤사실상의 금서조치 및 변형된 형태의 검열 ⑥자기검열의 확산.)

우리나라는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검열 금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바36, 헌법재판소 누리집 <http://www.ccourt.go.kr/> 참조.)

2-2. 두 번째 질문. “도서관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지향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도서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적 및 폐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그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며 옳지 않다”입니다.

도서관은 ‘광장’입니다.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입니다. 미국도서관협회가 1939년 「도서관 권리선언」(The Library's Bill of Rights)을 채택하게 된 계기는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의 포도』가 출판되었을 때, 이 작품은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어서 당시 지역신문은 엄청난 공격을 가했고, 의회에서는 의원이 이 소설을 탄핵하는 연설도 했습니다. 당연히 도서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수적인 정서를 지닌 지역의 도서관에서는 이 책이 부도덕하다고(또는 ‘불쾌하다’고) 열람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검열’ 행위에 대해 미국도서관협회는 적극적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내었고, 그 결과물이 「도서관 권리선언」(The Library's Bill of Rights)이었습니다.

이 선언의 3항을 보면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institution to educate for democratic liv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서관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상의 상호 교환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 개정된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에서는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에 대해 당시 미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위원장인 프란시스 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떠한 의견과 견해에 대해서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광장’(forum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서관이 반민주주의적인 자료를 검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지적자유 관점에서 본 우리들의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수가 싫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견해는 경청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근본적인 가치를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민주적 과정에 대한 비판정신을 새롭게 불어넣는 사상의 자유로운 전파에 의존합니다. 시민들은 독자로서 온갖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를 형성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 도서관과 독서의 자유가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적 여론 형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만약 공권력에 의해 지식과 정보의 원천적인 접근 금지, 특정 지식과 정보의 금지, 도서 검열, 금서목록의 작성 등의 적극적인 통제나,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막고자 예산 수립과 보조금 지

급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과 차별 취급 등의 간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3. 세 번째 질문. “좋은 책, 나쁜 책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좋은 책, 나쁜 책은 없다”입니다.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도 금서였던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의 길을 열었다고 일컬어지는,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년경~1384)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라틴어 성서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의 사후 31년이 지난 1415년, 당시 교황과 교회는 콘스탄츠공의회를 통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판결하고 그의 저작을 불태웠으며 무덤을 파헤쳐 이른바 부관참시를 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성경』과 『아레오파기티카』 부분은, 장동석, 『금서의 재탄생』, 북바이북, 2012.을 참조했습니다.)

오직 라틴어 성경만이 아무런 오류가 없는 『성경』이며, 오직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은 ‘나쁜 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어로 번역된 『성경』,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나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으로 언급할 책은 『실락원』의 시인,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의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 1644)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언론 자유의 경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상익 옮김, 소나무, 1999년/ 전면개정판, 인간사랑, 2016년) 청교도혁명(요즘엔 잉글랜드 내전 English Civil War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의 기치를 높이 들고 찰스 1세를 제압한 의회공화파가 반혁명에 맞서 혁명을 수호한다면서 검열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을 때 집필하고 출간한 것이라는 점이 이 책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청교도혁명처럼 극심한 양극화의 시기에 의회공화파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축소하려 하자 밀턴은 실정법을 여기면서까지 스스로 ‘금서’를 출판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거칠게 비유하여 말한다면, 이런 일일지 모릅니다. 즉 A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권하여 반대파인 B정파 정치 지도자의 도서를 도서관의 장서에서 제적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자, 그런 행위는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도서관에는 B정파 정치 지도자의 책도 있어야 한다고 밀턴은 주장했다고 말입니다.

밀턴의 말입니다. “나쁜 풍속은 비단 책이 아니더라도, 제지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다른 경로를 통해 완벽하게 습득되며, 사악한 교리는 책이나 교사의 안내 없이도 썩 잘 전파되므로, 교사는 굳이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것을 퍼뜨릴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막을 길도 없습니다. 나는 검열이라는 교묘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헛되고 불가능한 시도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검열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 문을 달음으로써 까마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무모한 사람과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59~60쪽)

“우리가 검열제와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부당하게도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으로 하여금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십시오.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108쪽)

세 번째로 언급할 책은 나치(Nazis)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의 저서 『나의 투쟁』(Mein Kampf)입니다. 이 발제문을 정리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검색해보니 1961년 이윤환(李潤煥)이라는 분이 번역한 책(新太陽社)부터 거의 100권에 달하는 책이 검색되어 나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여러 공공도서관에도 현재 다수 소장되어 있다고 검색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스는 독일인을 폐쇄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지옥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나치스는 ‘우리 독일’과 ‘우리 독일이 아닌 적’으로 세상을 양분화했습니다. 『나의 투쟁』은 이런 지옥도를 만들어낸 히틀러의 책입니다. ‘나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지옥도를 만들어낸 히틀러의 책을,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독자들은 읽고 토론합니다. 물론 아무도 이 책을 도서관에서 열람 제한, 제적, 폐기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투쟁』을 읽는다고, 읽고 토론한다고 그 독자가 나치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독서의 자유 선언>(1953)의 한 대목을 고쳐 써 보았습니다. “독서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평범한 개인이 비판적 판단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전제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장된 정치적 선전이나 오보를 판별하여, 무엇을 읽고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해로우리라 짐작되는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언론과 출판과 독서의 자유라는 유산을 희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평범한 개인이 비판적 판단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전제’는 ‘수동적 독자’가 아니라 ‘능동적 독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수동적 독자’ 즉 ‘나쁜 책’을 읽으면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독자가 아니라, ‘능동적 독자’ 즉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의 ‘나쁜 면’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면서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독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이 ‘좋은 책이야’라고 말한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쁜 책이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독자’로서 “내가 그 책을 읽고 내가 판단할 거야.”라고 말하는 독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자(讀者)A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믿음과 신념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책을 ‘나쁜 책이야’라고 말할 권리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독자(讀者)B에게 어떤 강제적 수단과 압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A가 ‘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독자B도 ‘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A가 읽고 자신이 ‘나쁜 책’이라고 판단했다면 독자B

도 그 책을 읽고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왜 독자A가 이 책을 ‘나쁜 책’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독자A에게는 독자B의 ‘책 읽을 권리’를 뺏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입니다.

3.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일반론’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들 독자(讀者)는 무엇을 해야 할까?

3-1. 첫째. 우리 국민은, 우리 시민은, 우리 독자는 책을 자유롭게 읽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관련하여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지적된 도서 목록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들 독자는 과연 그 책이 왜 누군가가 그렇게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말하는지 스스로 찾아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백 권, 이백 권(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268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112권인 것도 있으며, 또 어떤 자료에는 117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을 모두 구입해서 읽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전국의 각종 도서관이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책’(challenged books)을 잘 갖추어 놓도록 하고, 우리 국민이, 우리 시민이, 우리 독자가 스스로 찾아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독자A가 그렇게나 ‘나쁜 책’이라고 말하는데, 독자B도 그 책을 읽고 왜 독자A가 ‘나쁜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용하고 게시는 공공도서관 등에 ‘문제가 제기된 책’이 소장되어 있지 않다면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바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종류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각 부처의 행정자료실 포함),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참조.

<https://books.nl.go.kr/PU/main/index.do>

3-2. 둘째. 우리 국민은, 우리 시민은, 우리 독자는 도서관이 정보와 사상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지적자유를 함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지적자유를 지키는 일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독서문화와 도서관문화의 역사에는 오랫동안 자기검열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었던 규제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흑역사가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에서도 ‘골치 아파서’ ‘문책 당하기 싫어서’ 혹은 ‘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논란이 일어난 책이나 일어난 만한 책을 제적하거나 서가에서 빼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해 각종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①자료수집의 자유 ②자료제공의 자유 ③검열을 거부하고 반대할 자유 ④도서관 자유가 침해될 때에는 이를 배제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지향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이런 책이 ‘나쁜 책’이고 또 이런 책은 ‘좋은 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독자가 어떤 책을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해서 그 책을 도서관에서 제적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일은,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른 독자의 알 권리, 독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일로써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의 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가들인 사서(司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도서관선정위원회를 두고 지역주민과 학생 청소년 등 이용자인 시민을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최적의 장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지향이 올바르다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원(民願)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이 또한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발 이런 형태의 민원(民願)은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길러내자는 마음은 우리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 발표된 「2022 개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가운데 중등교육 과정의 보건 과목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책을 권하면 좋을지, 토론은 충분했던 것일까요?

- [9보03-01] 성의 개념과 성역할 및 영향요인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탐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성문화와 성의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9보03-02] 청소년기 성적 발달과 관계, 신체상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며 건강하게 관리한다.
- [9보03-03] 성적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탐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처전략을 세우고 이성 교제 시 경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 [9보03-04] 성폭력·성매개감염병 등 성 건강 위험요소를 미디어 문해력 및 성문화와 관련지어 탐색하고 건강하게 관리·옹호한다.
- [9보03-05] 임신, 피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십대의 임신과 미혼 부모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에 유익한 선택과 자원을 지지한다.
- [9보03-06] 청소년의 성 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적 쟁점이 있는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근거와 맥락, 고정 관념, 차별,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여 균형 있고 평등한 성문화를 조성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2022년 12월 22일(목), 대한민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확정·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중학교 교육과정【별책 3】의 보건-선택’에서

3-3. 끝으로 ‘문제가 제기된 책’이라고 해서 각종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제적 및 폐기하려고 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즉각 취소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거듭 말씀 드리지만, 우리 국민, 우리 시민, 우리 독자는 ‘책을 읽을 권리’를 회복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 발제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회 지민규 의원이 2023년 7월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충남 지역의 여러 도서관에 비치된 책의 내용을 거론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을 배울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2023년 7월 25일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의 보도, ‘충남 학교·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 논란’에서 인용.)

이에 대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회의록이 현재까지 충청남도의회 누리집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 인용문은 필자의 녹취 초고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회수 조치한 도서를 살펴보았는데, 낯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으로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연령대,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교육 목적에 부적절한 내용이라 생각하여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습니다. 젠더 문제와 소수자 권익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성 소수자의 공공장소 입장을 제한한다든가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제한 등 차별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간 등 여러 가지 낯 뜨거운 용어가 담긴, 아이들 성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 소수자 옹호를 내세우는 의도를 보면 일반인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http://council.chungnam.go.kr/viewer/video/minutes/3330.do?pos=5700#app>)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의 발언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떤 책을 대상으로 열람 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거듭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조치는 취소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우리 시민, 우리 독자는 그 책들을 읽을 권리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자료1]

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

2015년 7월 13일, 대한민국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도종환 의원실+‘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토론회 발제문

안찬수(책임는사회문화재단)

1.

먼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도종환 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독서’와 ‘도서관’과 관련된 토론회와 공청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 때문에 마련된 것입니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자 근본규범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 토론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 및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 5월 28일 경기도교육청이 초, 중, 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이 두 가지 공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 때문에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공문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문제적 행위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 ‘압력’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일정한 틀 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입니다. “인간 사고의 틀과 행동규범을 근본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노력이 금서조치라는 정치적 행위의 목적”²²⁾이라 할 때, 이것은 ‘변형된 형태의 검열’이며 ‘사실상의 금서조치’라는 것이 제 발제의 요지입니다.

22) 백승종, 『금서, 시대를 읽다』, 산치럼, 2012년 10월, 16쪽

3.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한마디로 ‘검열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 토론회 자리에서, ‘검열(檢閱, censorship)’에 대한 법리적 논의를 자세하게 전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열’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는, 오늘 토론회와 이후의 논의 전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언론·출판에 대해서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 그 이유는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크며,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은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검열 금지 원칙)

헌법 제21조는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검열 금지 원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하였습니다.²³⁾

위의 판례에 따르면 검열은 네 가지 요건을 매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에 따르면, 검열은, 다섯째 위 네 가지 요건 외에 표현물의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결정문, 1996년 10월 4일,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3헌가13\)](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3헌가13))에서.

발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표현물의 청소년유해성 등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등급제’는 검열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섯째 사전심사가 내용적인 심사일 경우에만 ‘검열’의 범위에 포함되며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심사를 위한 사전심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²⁴⁾

검열 금지 법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²⁵⁾

4.

그런데 이처럼 검열 법리의 목표가 뚜렷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운용하는 ‘검열’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해놓은 ‘검열’의 요건은 너무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미연방대법원은 한국의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전제재(prior restraint)**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전제출을 의무화한 출판허가제는 당연히 금기시되지만 ‘사전제재’의 개념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사전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법원금지명령이나 행정기관의 금지명령에도 적용되며 완전금지가 아닌 ‘등급제’에 의한 부분적인 제한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의 ‘사전제재’ 개념은 한국의 ‘검열’ 법리보다 폭이 넓은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검열’ 법리에서는 관련된 표현물이 이미 일반에 공개되고 유통된 이후에 추가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내려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출판금지 명령도 미국에서는 ‘사전제재’로 평가받는 것이다.”²⁶⁾

‘사전제재’는 ‘표현물에 대하여 장래적인 효력을 가지는 모든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제재’는 ‘검열’뿐만 아니라 ‘검열과 같은 작용과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박경신 교수는 “가장 쉽게 생각해서 심의 이전의 출판을 금지하면 당연히 ‘검열’로 정의하면서 심의 이전의 출판을 일부 허용한 후에 출판물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검열’이 아니라는 것은 형식주의 규범이 아닐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전제재 법리’에 따르면,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충실할 경우, 사전제출의무를 부가해야만 사전제재라거나, 반드시 등급제를 통한 부분적 금지가 아닌 완전한 출판금지가 있어야만 사전제재라거나 하는 요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²⁷⁾

24)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가9 및 1998. 2. 27. 96헌바2 등

25)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바36, 이상 헌법재판소 누리집 <http://www.ccourt.go.kr/> 참조.

26)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 호. 강조 인용자.

27)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 호.

현재 헌법재판소가 운용하는 ‘검열’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성기 교수(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는 ‘검열’의 정의를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사후제한도 검열의 한 형태로 엄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며,²⁸⁾ 이인호 교수(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도 ‘검열’을 “국민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직접 어떤 표현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정부 또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심사해서 이를 걸러내는 조치, 즉 사상의 공개 시장의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로 파악합니다.²⁹⁾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 및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 5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이 초, 중, 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발송한 공문)도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본 검열의 ‘형식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검열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 그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보면 ‘변형된 형태의 검열’이자 ‘사실상의 금서조치’이라 할 것입니다.

5.

박경신 교수가 위의 논문에서 거론한 미국의 사례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우리나라 사례와 흡사한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것은 ‘밴텀북스 대 멜코(Bantam Books v. Melko)’ 사건입니다.

1950년 뉴저지주 미들섹스카운티의 검찰이 ‘불쾌문학위원회’(Committee on Objectionable Literature)라는 민간단체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그 단체로부터 ‘불쾌’(objectionable)하다는 판정을 받은 서적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서적 유통업체들에게 전달하면서 “검찰은 다음 서적들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생각하는데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배려해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거의 모든 서적유통업체들은 관련 서적들의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목록에 자신이 발행한 책 『중국인의 방(Chinese Room)』이 포함된 출판사 발행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채너리 법원은, 서점에 보낸 서한이 강제력 있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위 서한이 발송된 후 미들섹스카운티에서 『중국인의 방』이 단 한 권도 판매되지 않았다’며 일축하고, 검찰의 행위가 사전제재라고 하였습니다.

‘사전제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자기검열(self-censorship)** 때문입니다. ‘사전제재’는 그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검열과 흡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가 밝혀놓은 ‘검열’의 요건(4가지 혹은 6가지)에는 부합하지는

28)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 한국헌법학회 제12회 헌법학술발표회 발표집, 2000. 5. 27.

29)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제15호, 1997, 261면.

않기에 ‘검열’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표현의 결과물(책, 방송, 인터넷, 음반/음악 영상물, 공연, 영화/비디오, 게임 등)을 국가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 제출을 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는 상황이라면, 이는 검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표현의 결과물에 대하여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변형된 형태의 검열’을 작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자기검열의 기제를 확대하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이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작품이 전시가 취소되었으며,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가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정부의 예산삭감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제작 아시아프레스 씨네포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뒤, 현임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일이 생겨나자, 「다이빙벨 패썬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올 초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 ‘사전 심의’와 사실상 독립 영화 검열을 동시에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이빙벨」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영화가 상영되는 걸 막기 위한 탄압책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4년 가을에는 정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사이버 망명’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연극제는 극장이 아닌 거리에서 폐막식을 열었습니다. 매년 연극제가 열렸던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의 폐쇄와 관련한 논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연대활동을 나서고 정부정책을 비판한 연극인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한국방송(KBS) 「개그콘서트」의 정치 풍자 코너 ‘민상토론’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풍자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서도 ‘무한뉴스-건강합시다’ 코너를 통해 메르스 예방법을 소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록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이 같은 사례는 많을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창작의 기본은 무엇이든 필름에 담고 무엇이든 대사로 표현하고 무엇이든 화폭에 담을 수 있고, 무엇이든 몸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대중들에게 채 다가가기도 전에 현장의 문화예술인들 스스로 표현할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융성’이라는 거창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미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이대로라면 ‘문화융성’ 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명을 다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진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화예술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협화음이 작품과 예술성을 둘러싼 건전한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부추겨야 하겠지만, 문외한이 봐도 문화와 예술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치사하고 조악한 논쟁으로 평지풍

파를 일으키는 정부 산하기관들의 행태는 스스로 '문화융성'의 근본을 갉아먹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³⁰⁾

<각종 표현의 결과물과 심의제도>³¹⁾

매체	책	방송	인터넷	음반/ 음악영상 물 등	공연	영화/ 비디오	게임
법률	출판문화 산업진흥 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제기구	간행물윤 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 급위원회
규제시점	사후심의	사후심의		사후심의	외국공연 물에대한 수입추천 사전심의	사전심의	사전심의
규제방법	등급	주의경고 및과징금	삭제차단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중복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사후심의에 의한 등급 부여)						

6.

이번 사건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제재’가 ‘변형된 형태의 검열’이자 ‘사실상의 금서조치’로 이어진 것임을, 주요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9일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대표 이종철, 류현수 연구위원,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철문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고문,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등),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서울 프레스센터

문제수준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추천도서관	추천일자
아주 심각함	나는 공산주의자다	허영철	보리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서 평단	2014. 월 미구분
	나는 통일이 좋아 요	정혁	대교출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어린이	2010. 10
	10대와 통하는 한 국 전쟁 이야기	이임하	철수와 영희	인천주안도서관 청소년	2014. 11
	교과서 밖에서 배	정은교	살림터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서	2015. 03

30) 2015년 5월 25일, SBS 뉴스 윤장현 기자, [취재파일] 사방이 '삐거덕'...표류하는 문화융성, 출처: <http://goo.gl/3bfqjS>

31) 박경신, 『진실유포죄』, 2012년 5월, 210쪽 표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

	우는 역사 공부			평단	
	남경태의 열려라 한국사	남경태	산천재	서울양천도서관 청소년	2014. 07
	오천년 한반도 역사 속을 달리는 한국사 버스	박찬구	니케주니어	전남함평공공도서관 / 도립도서관 선정 어린이	2014. 10
심각함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이광희	스마트 주니어	대구두류도서관 청소년	2015. 01
	10대와 통하는 한국사	고성국	철수와 영희	울산울주통합관 청소년	2014. 08
	꼬마역사학자의 한국사탐험	윤준기	토토북	울산남부도서관 청소년	2015. 01
	10대와 통하는 문화로 읽는 한국 현대사	이임하	철수와 영희	서울노원평생학습관 청소년	2015. 03
개선필요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10권	금현진 외2명	사회평론	북구디지털도서관	2014, 월 미구분
연구필요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서중석	웅진지식하우스	분당도서관 청소년	2015. 04

*2015년 5월 19일,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케이,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책 리스트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및 교육청에 공문 발송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관련 협조 요청」(도서관정책기획단-2075)

5월 22일,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보도, 「비전향 장기수 수기 만화,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 논란」

5월 22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평생교육학습관(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추천도서 목록에서 해당 도서 삭제 발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한 관계자는 “초등학생용 권장도서로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있어 해당 도서를 추천했던 교사의 동의를 얻어 추천도서목록에서 일단 삭제했다. 시간을 두고 검증한 뒤 학생 대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명이 추천하면 선정되는) 추천도서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2015년 5월 22일, SBS뉴스부, 「비전향 장기수 수기 만화,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 논란」)

5월 22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해당 도서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중 해당 도서를 보유한 도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도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폐기 조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이옥진 기자 보도, 「청소년 도서 부적절 논란 '나는 공산주의자다」)

5월 28일, 경기도교육청, 초, 중, 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공문 발송 「언론보도관련 논란 도서 처리 협조」(문예교육과-3651)

관련하여,

2. 해당 도서를 구입한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통하여 학생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서처리문제: 학교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가 학교 교육과정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처리

나. 사후독후처리: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들에게는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

다. 도서목록선정: 추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타당하고 적절한 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천도서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끝.

6월 8일,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공문 철회 및 시정 요청(전학사연 2015-005호)

6월 11일, 한겨레(한승동 기자) 도서관에 황당한 ‘분서갱유’ 강요하는 정부

6월 18일, 전학사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항의방문

김미리 경기도의원(전 전학사연 회장), 학교별 관련 도서 처리현황 조사결과 제출요청

6월 22일,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성명 발표, 「어린이, 청소년 도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하는 시도와 관련한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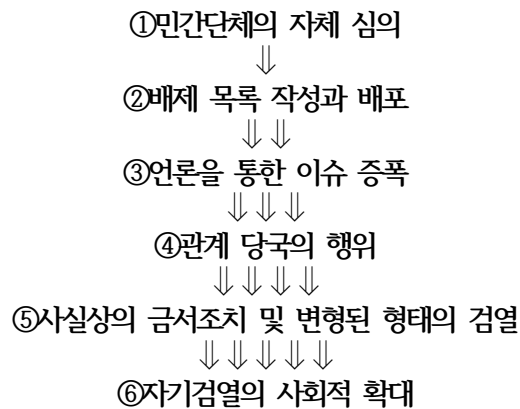
6월 22일, 경기도교육청, 시정공문 발송, 「언론보도 관련 논란도서 처리 문서 폐기 알림」(문예교육과-4399)

6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알림공문 발송, 「언론보도 관련 논란도서 처리 문서 폐기 알림(정정)」(문예교육과-4477)

7.

이 일정을 요약하자면, 박성신 교수가 소개한, 1950년 미국의 ‘불쾌문학위원회’로부터 촉발되었던 ‘사전제재’의 사례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제재’에서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8.

앞서 언급한,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의 배제 목록 작성과 배포 이후 전개된 사건과 같은 맥락의 일로 보이는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한 단체가 특정 책을 거론하며 “1. 책 구입 배경 및 과정 2. 추천한 교원 및 추천 배경 3. 책 활용 현황 및 추후 활용계획”을 회신하라며 서울, 경기 지역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일입니다. “회신 기한은 본 내용 증명을 받으신 후 2주”라면서 “회신이 없을 경우 정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귀교를 사법부에 고발하여 법치 정의가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은 중학교 관리자는 “내용 증명을 받으니 학교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은 당연히 학교에 대한 협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편향된 단체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학교에 당부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³²⁾

이 또한 ‘변형된 형태의 검열’ 및 ‘사실상의 금서조치’을 통해 ‘자기검열의 사회적 확대’를 꾀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사실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 독서문화의 역사, 도서관문화의 역사는 두려움이 억압을 낳았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불과 이십여 년 전의 기록만 들추어보아도, 직접적으로 출판을 금지한다든가, 출판사와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하여 도서를 압수한다든가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독서문화와 도서관문화의 역사에는 오랫동안 자기검열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규제와 압력이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 지식의 흐름을 탐구한 김영기 교수(경성대 문헌정보학과)는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에서 도서관 사서의 발언을 통해 ‘자기검열의 내재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리영희의 책이나 출판사가 이상한 것, 풀빛이나 일월서각 등의 책은 골치 아프다. 사지 말라고 한다. 괜히 그런 책을 서가에 꽂아두었다가 문책당하기 싫다. 그렇지만 실제 문책당한 적은 없다. 그 전에 문제될 만한 책은 모두 들어내어서 시민도서관에 다 주어버렸다. 공무원이며 누구나 문책당하기 싫어할 것이다. 삼일공사라든가 정보과 형사들이랑 많이 싸웠다.(K3관장과의 인터뷰, 1997.11.5. 11:00~13:30, Y도서관 관장실)³³⁾

이런 이야기는 암울했던 권위주의 체제 하의, 그 시절의, 이야기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도 ‘골치 아프다’, ‘문책당하기 싫어서’ 혹

32) 2015년 6월 2일자,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보도, 「『특정도서 추천교원 누구냐?』... 학교에 '협박' 편지」.

33) 김영기 교수(경성대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한울아카데미, 1999년, 126쪽

은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논란이 불거질 만한 책을 도서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서가에서 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흑역사(くろれき)'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이번 사건과 오늘 토론회를,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자 근본규범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서문화의 현장, 도서관문화의 현장에서 뻗히 눈에 보이지만 애써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자기검열의 기제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서와 도서관의 보편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독서의 자유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검열’과 ‘사실상의 금서조치’를 통해 ‘자기검열’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발제자의 판단입니다. 이런 확산을 막는 일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의 사서와 담당 선생님들께서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①대한민국 국회는 ‘독서의 자유, 도서관 자유 선언’을 하나의 결의문을 채택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침 19대 국회는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공동대표 신기남, 이주영 의원/공동간사 김장실, 도종환 의원/ 여야 및 무소속 국회의원 74명이 참여)을 창립하고 “더 많은 국민이 질 높은 지식정보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국회가 나서서 도서관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예산이 도서관 발전에 투자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구습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 하였습니다.³⁴⁾

②「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11690호) 및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을 개정하여 독서의 자유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도종환 의원께서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19, 발의연월일: 2015년 4월 1일)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 개정법률안에 도서관의 자유 관련 내용을 추가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34) 정옥자,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의 도서관-규장각 사례를 중심으로」의 편집자 주, 2013년 10월 1일자, 웹진 나비 <http://goo.gl/N0Vg0Y> 참조

③대한민국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 등 국가도서관, 그리고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이 9월 독서의 달, 첫 번째 주간(2015년의 경우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을 ‘금서 읽기 주간’으로 선언하고,³⁵⁾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금서’와 관련한 전시 및 토론회 개최, 이를 통해 지적자유,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④책과 관련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출판계는, 시민과 학생 등이 ‘금서 읽기 주간’에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각종 읽을거리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⑤전국의 독자들은 ‘금서 읽기 주간’에 역사상 ‘금서’가 되었던 책들³⁶⁾을 활발하게 읽고 토론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12.

미국도서관협회가 1939년 「도서관 권리선언」(The Library's Bill of Rights)을 채택하게 된 계기는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지역의 도서관에서 이 책이 부도덕하다고(앞에서 언급한 용어로는 ‘불쾌하다’)고 열람을 금지시켰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검열’ 행위에 대해 미국도서관협회는 적극적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의 3항을 보면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institution to educate for democratic liv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서관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상의 상호 교환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 개정된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에서는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에 대해 당시 미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위원장인 프란시스 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³⁷⁾

도서관은 어떠한 의견과 견해에 대해서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광

35) 미국의 경우, 9월의 마지막 주를 '금서주간'(Banned Book Week)으로 정하고 사서, 서점, 출판사, 언론인, 교사, 독자들이 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끌어 들여 매년 독서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테마로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음.

<http://www.ala.org/bbooks/bannedbookweek> 참조.

36) 마르틴 루터, 마키아벨리, 칸트,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의 저서나 안숙선의 『금수회의록』, 백석의 시집 등 우리나라의 금서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벌어진 책들, 예를 들어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느님』이나 현기영의 『지상에 손가락 하나』,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2008년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등을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7) 이 부분은 황성기,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도서 대출 기록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년 8월), 제4장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방안 부문 참조.

장'(forum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서관이 반민주주의적인 자료를 검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된다. 지적자유 관점에서 본 우리들의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즉 다수가 싫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견해는 경청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³⁸⁾

뒤에 부록으로 붙여 놓은, 미국이나 일본의 도서관과 지적자유 선언을 보면 기본적으로 ①자료수집의 자유 ②자료제공의 자유 ③검열 거부 ④도서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⑤개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 ⑥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도서관의 이용 기록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³⁹⁾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독서문화, 도서관문화의 현장에서 '독서의 자유 및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구체적인 실천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8) 박준식 손문철 공역, 『도서관자료론』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58면.(吉賀節子 外, 『圖書館資料論』, 樹村房, 1983), 황성기의 위 논문, 81쪽 재인용, 일부 수정.

39) 황성기의 위 논문, 88쪽 참조.

[참고자료2]

2023년 5월 11일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읽습니다.”

트래시 홀, 미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Tracie D. Hal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xecutive Director

1876년 창립된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첫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무총장 트래시 홀. 홀은 자유로운 독서권 확보를 위한 투쟁, 도서검열과 도서관 예산 삭감에 대한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인물로, 올해 타임지 선정 100대 인물(2023TIME100)입니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Min Jin Lee)은 홀에 대해 “홀의 책과 도서관에 대한 사랑은 동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다가올 모든 사람의 해방을 위해, 우리가 증오와 거짓말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타임지 100대 인물 갈라쇼에서 행한, 홀의 연설을 여기에 옮겨 놓습니다.

나는 하나의 신념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은 그것을 찾는 독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교도소도서관처럼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품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는 도서관은 언제나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열려 있어야 한다는 믿음.

나는 한 사람의 도서관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폭탄 위협과 투옥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도서관협회의 비전인 이러한 말이 항상 진실이 되도록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전역의 수천 명의 ‘사서-전사들’librarians-warriors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읽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읽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읽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펼침으로써,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생각하고, 창조하고, 살고, 읽는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읽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충남지역 도서관을 민원 대상으로 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위배 도서 폐기 요청(268권)> 우편 공문이 접수됨.

민원인은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도서, 이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2023년 5월 17일 안** 장학사는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지교육지원센터에 질의. 질의내용은 ①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을 완전 배제하라는 해석이 타당한가. ②단체에서 요청한 도서 목록의 폐기가 타당한가.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교육부 개정 내용을 확대 해석한 것이며, 고시에 적용된 사항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단점과 장점 모두 평등하게 교육하라는 의미임. 또한 성평등 교육은 단계별로 꼭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이 이용하는 곳으로 요청한 목록의 도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

*주석

가. 2022년 12월 22일(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함. 이는 2022년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45개 과제, 860여 명)를 추진하고, 연구진의 50%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 것임. 특히 역사, 보건, 도덕, 사회, 음악 등 교과목의 쟁점들은 각론조정위(9.21.)와 개정추진위(9.26./10.20.), 교육과정심의회*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되었다고 함.

나. 행정예고(안)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은 주로 성(性) 관련 표현,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용어 서술, 학교자율시간 운영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이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본의 주요 수정·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론)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 68시간 삭제, 수업시간 확보 근거만 제시
- (역사) 한국사의 전근대사 비중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추가 개발(고대, 고려, 조선 총 3개)하여 조정
- (성 관련) 보건의 경우,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하고 기술·가정의 경우, 의미가 불명확한 '전성(全性)적 존재'용어 삭제

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수정·의결사항(12.14.)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 (성 관련) 섹슈얼리티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성취기준 해설 내용 보완
- (도덕함, 노력 등) 도덕함, 윤리함, 철학함은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 등으로 문맥에 맞

게 표현 수정, 교수·학습 방향에 ‘노작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화하고, 수업방법의 예는 삭제

라. 2022년 12월 22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제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발표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가운데 보건-선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중학교 교육과정【별책 3】 616~634쪽 요약)

라-1. 보건과 교육과정은 보건과의 성격 및 정체성에 기초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역량을 함양하여 생활 속에서 건강을 실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과 질병,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 공동체, 성인지, 문화 다양성,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디지털 소양 등 건강한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보건과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정서와 정신건강, 성과 건강, 건강안전과 응급처치, 건강자원과 건강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개 영역 가운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 건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3)성과 건강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국가 발전에 기본이 된다. 성 건강관리는 성인지 관점 및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이해	성과 성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의 개념 성적 발달과 신체상
	사랑, 권리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자기결정권 이성교제와 경계 존중 성역할 및 임신과 피임
	성문화와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성매개감염병 등 성 건강위험 성 건강문제와 관리·옹호 성문화
과정·기능	건강이해 건강탐구 실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건강에 관련된 생리와 주제, 제도, 권리 탐색하기 성적 발달과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디지털 미디어와 성문화를 탐색하여 개선하기 안전하고 행복한 선택을 위한 균형 있는 관점으로 대처전략 세우기 청소년 성 건강문제를 알아보고 예방·관리하기 성과 관련된 차별과 고정 관념, 평등과 존중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하기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행복한 성의식과 성문화 함양 성인지 감수성 및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배려하는 자세 성 건강을 근거를 가지고 관리하는 태도 성 미디어 문해력 함양

- [9보03-01] 성의 개념과 성역할 및 영향요인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탐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성문화와 성의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9보03-02] 청소년기 성적 발달과 관계, 신체상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며 건강하게 관리한다.
- [9보03-03] 성적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탐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처전략을 세우고 이성 교제 시 경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 [9보03-04] 성폭력·성매개감염병 등 성 건강 위험요소를 미디어 문해력 및 성문화와 관련지어 탐색하고 건강하게 관리·옹호한다.
- [9보03-05] 임신, 피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십대의 임신과 미혼 부모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에 유익한 선택과 자원을 지지한다.
- [9보03-06] 청소년의 성 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적 쟁점이 있는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근거와 맥락, 고정 관념, 차별,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여 균형 있고 평등한 성문화를 조성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가) 성취기준 해설

- [9보03-01], [9보03-02] 성 개념, 월경, 몽정, 성 욕구와 관심 등 성적 발달 및 성역할에 대해 자신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족, 친구, 미디어의 영향 등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균형 있게 인식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 건강관리를 탐색하도록 한다.
- [9보03-03]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에 관련된 의사 표현 및 행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며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성적 강압에 대처하고, 왜곡된 성 관련 정보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룰 때에는 청소년이 직면하게 될 위험이나 보호되지 않는 성적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와 그 취약성, 책임을 함께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비교하여,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갖도록 한다. 여기서 보호는 WHO에서 제시한 원치 않는 조기 임신,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STI), 성적 학대, 성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경계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적 영역에 대한 구분을 의미하며, 관계의 신뢰도나 친밀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함부로 경계를 침해하지 말고, 경계를 넘을 때는 동의를 구하는 등 소통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 [9보03-04] 성 건강위험요소들은 상황에 따라 음란물·성 상품화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성폭력은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하고, 성매개 감염병은 에이즈를 포함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폭력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또한 미디어 문해력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성문화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성윤리를 포함하여 다룰 수 있다.
- [9보03-06] 청소년의 성 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공론화된 이슈들을 다루며,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사건을 보는 시각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선택과 환경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성적 발달에 대해 학습할 때 개인차를 존중하고 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탐색하도록 한다.
- 디지털 매체에서의 성에 대한 표현과 해석은 주관적이거나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콘텐츠를 활용함에 있어 성인지적, 공동체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탐색하여 안전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등을 배려한 상황과 맥락을 설정하며, 성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 성폭력, 성 건강위험, 불평등 개선에 대해 경계 존중과 동의, 인권,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접근하도록 한다.

2023년 6월 1일

서천군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5차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위_회의식_2일차01

http://scouncil.xcaster.co.kr/mobile/vod_view.jsp?pk_vod_no=4306

2023년 6월 1일 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 보도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어린이 및 청소년 성교육 교재 심각한 유해성에 경종

충남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천군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도서관 어린이코너에 비치된 일부 도서에 성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에 유해성이 있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경석 의원은 “현재 서천도서관에는 총 37권 45회 대출, 장항공공도서관에서는 42권이 44회에 걸쳐 대출되고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일선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하지만 일부 도서에서는 자극적이거나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하고,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해 이 도서들이 과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인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른바 ‘포괄적 성교육’이 가져온 심각한 폐해라고 사료된다”며 “포괄적 성교육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 청소년도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애 행위가 정상적이며 낙태

를 권리로 가르치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성평등’과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용어가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이 다른 소수자들을 배제한 셈이다”라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조문에 따르면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해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출판물은 유해 간행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무조건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차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유해한 성교육 도서의 범람에 대한 대안책으로 “각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띄워 대출과 열람을 중단시키고, 성교육 관련 도서의 심의 검증을 수행할 ‘학부모연대’ 혹은 별도의 검증단을 구성해 교육청 및 도서관과 합동으로 기존의 유해 도서와 신규 도입 도서에 대해 심의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2023년 6월 6일

검열에 대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회장의 성명서

President's statement on censorship

2023년 6월 5일 IFLA의 바바라 리슨(Barbara Lison) 회장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장서를 자유롭게 구축하고 유지하는 도서관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정기적인 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정치가(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든 아니든)가 책을 제거하거나 금지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 직업이 지적 자유의 챔피언이라는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IFLA의 지적 자유에 대한 입장의 중심에는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 가능성은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견해가 아닌 전문적인 고려 사항에 의해 좌우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문지기가 아닌 지식의 관문이 되어 개인과 사회의 발전, 혁신적 창의성, 인권 실현에 필수적인 지적 자유를 지원하는 사명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IFLA는 도서관 소장품에서 책을 제거하거나 취득을 막으려는 정부 및 비정부 활동가의 노력을 비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서는 커뮤니티 전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컬렉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스스로

주도해야 하며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가장 큰 정치적 힘을 누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서관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도서관은 진보와 형평성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도서관의 경우에 특히 우려스러운데, 도서관이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업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라이브러리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IFLA의 가치에 따라 우리는 기관과 협회가 지적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시민은 사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정부의 보증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필요합니다.

2023년 6월 5일

바바라 리슨

2023년 6월 8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LGBTQI+커뮤니티를 보호하는 조치를 발표

이는 LGBTQI+의 인권을 계발하기 위한 프라이드 월간(Pride Month, 매년 6월)에 맞춰 발표된 것. 바이든 정부는 12개가 넘는 주에서 미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자유(basic values and freedoms)를 침해하는 반 LGBTQI+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LGBTQI+ 커뮤니티와 함께 이러한 공격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주요 내용은 세 가지. ①LGBTQI+ 커뮤니티를 권리와 안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②LGBTQI+의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LGBTQI+의 미국인을 그 권리를 위협하는 금서 조치로부터 지킨다.

<https://han.gl/gusmVH>

같은 날,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LGBTQIA+의 미국인에 대한 금서 및 기타 공격의 증대에 대한 대응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https://han.gl/tGzTxL>

2023년 6월 12일

“금서를 금지합니다.”

금서를 불법화한 미국 일리노이 주

2023년 6월 12일, J.B. 프리츠커(J.B. Pritzker)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의 공공도서관은 ‘당파적 또는 교리적partisan or doctrinal’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새 법률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부로 주정부의 자금 지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과 마크 트웨인과 J.D. 샐린저와 같은 작가의 작품이 항의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책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항상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현실을 배우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8ucE_K-hlr0

2023년 6월 25일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미국출판협회(AAP)가 1953년에 발표된 독서의 자유 성명(Freedom to Read Statement) 70주년을 맞아 성명의 이념과 내용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

검열 위협이 계속해서 도서관, 학교, 출판사, 저자 및 서점을 대상으로 전개함에 따라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미국출판협회(AAP)는 도서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에게 책에 대한 자유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성명서를 읽어 보십시오. 작가 조합과 미국서적협회는 물론 수많은 기관이 여기에 서명하고 합류했습니다.

1953년 6월 25일에 처음 발표된 독서의 자유 선언문은 시대를 초월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독서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독서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60개 이상의 주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의심할 여지없이 위헌적이며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도서관 협회 전무이사인 트레이시 홀(Tracie D. Hall), 미국서적협회 대표 앨리슨 힐(Allison K Hill), 미국출판협회 회장 마리아 팰란트(Maria A. Pallante); 작가조합의 대표 매어린 라젠버거(Mary Rasenberger)의 공동 발언입니다.

“70년 전, 매카시즘에 의해 촉발된 두려움, 의심, 억압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이는 지적 자유와 이를 보호하는 헌법적 보호에 대한 강력하고 강력한 확언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픽션과 논픽션을 포함한 광범위한 표현을 목표로 하는 학교, 도서관, 서점에서 검열의 새로운 물결과 씨름하고 있지만, 독서의 자유 선언문은 여전히 글을 쓰고, 출판하고, 조사할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입을 권리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행복 추구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항상 모든 정치적 영역과 모든 개인적인 관점, 오래된 아이디어와 새로운 아이디어 모두에서 합법적인 보급과 언론의 엄격한 보호에 의존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자의 모든 표현이 아이디어 시장의 엄격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견뎌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유 사회는 우리가 무엇을 읽기로 선택하며 읽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전임자들이 1953년에 말했듯이,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해 생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독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유 사회를 반영하고 봉사하는 사명을 가진 작가, 출판사, 서점 및 도서관의 권리를 생각합니다.”

2023년 6월 27일 MBC뉴스데스크 보도, "박원순·손석희 책 있나?"..조경태, 고교에 자료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여당위원이 전국의 고등학교 도서관에 특정한 책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목을 봤더니, 정치인, 특히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 '세월호' 관련 책도 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책 몇 권으로 학교마다 정치 성향을 재단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오늘 교육청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특정 인물과 관련된 책이 도서관에 있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경기도 00고교 사서 교사] "키워드에 해당되는 책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건데.. 키워드가 편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공문에선 10명을 거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언론인 손석희 씨가 등장했습니다. 또, 세월호와 새마을 운동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조사를 요청한 곳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이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똑같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교육청 관계자] "내용이 상당히 이질적이긴 하지만, 특이하긴 하지만··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이번 주까지 책 보유 현황을 집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전북 00고교 사서 교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잖아요. 학교로 이런 공문이 온다는 것 자체도 황당하고 분노했습니다."

사서 교사들은 현직 여당원이 학교에 비치된 책으로 정치 성향을 검열하려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전국사서교사노조] "의원실에 전화했더니 '민원이 들어왔다, 도서관 정치 편향'이라고··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놓는 건데 사전 검열식으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실은 "단순히 도서 현황을 파악하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통상적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실 도서 보유 현황 요구 규탄

학교 도서까지 검열하겠다는 말인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 국회의원 조경태(국민의 힘, 부산 사하구을) 의원실에서 6월 27일 공문을 통해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정치사 인물 관련 도서 보유 현황'을 요구하였다. 공문에서 제시한 작성 예시 표에는 박원순, 손석희, 이승만, 박정희 등 인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월호'와 같은 단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사서교사 위원회는 조경태 의원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 현황 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명백한 '도서 검열'이다. 각 학교의 교장들에게, 앞으로 학교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들을 잘 검열하라는 암묵적 지시와 같다.

조경태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교육위원이라면 교육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학교별로 무슨 도서를 구매했는지, 검열에 가까운 현황 조사 행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뿐 아니라 이번처럼 교육적 의도가 불분명한 조사 행위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도서관인 윤리 선언 중」

○ 2019년에 ‘도서관인 윤리선언’이 개정되었다. 전국의 사서교사들 또한, 이용자의 신념과 관계 없이, 차별 없는 이용을 보장하고,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도서의 선택권은 이용자인 학생들에게 있다. 특히, 이번 공문이 전달된 학교는 고등학교 도서관이다.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 전교조는 조경태 의원실의 학교 검열이야말로 학교가 정치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6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3년 6월 30일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보도

고교 이어 403개 대학에 '손석희' '박원순' '세월호' 책 현황 요구, 조경태 의원 요청으로 교육부, 대학에 공문... "사상검열""학문의 자유 침해" 비판

국회 교육위 조경태 국민의힘(부산 사하을) 의원실과 교육부가 전국 국공사립 모든 대학에 역대 대통령은 물론 손석희 전 아나운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세월호 참사 등 관련 책 보유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의원실은 전국 고교에도 같은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도서관 사상검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단독] 고교에 '박원순' '손석희' '세월호' 책 보유 현황 제출 요구 <https://omn.kr/24jz6>)

교육부 공문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로 보내라"

30일 <오마이뉴스>는 교육부가 최근 전국 403개 고등교육기관에 일제히 보낸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조경태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 요구 내용에 대해 7월 5일까지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처는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로 명시했다.

이 공문 첨부자료를 보면 조 의원실이 대학에 요구한 자료는 박원순, 손석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10명의 인물과 세월호, 새마을운동 등 2건의 사건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책 보유 유무 현황이다.

김한울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부와 조 의원실이 역대 대통령은 물론 손석희, 박원순, 세월호 등을 찍어서 책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것은 도서관에 대한 사상검열"이라면서 "더구나 이런 자료를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요구한 것은 학문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교육기관을 정쟁 수단화하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전국사서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조경태 의원실은 이런 검열성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조 의원은 자료요구를 철회하고 이미 수집된 자료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였기에 단순하게 요구 내용을 대학에 전달만 한 것이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이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다"면서 "공문 발송 시기 또한 해당 자료 요구에 대한 논란 시점 이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상검열 논란에 조경태 의원실 "단순 현황파악 위한 것"

이같은 논란에도 조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자료 요구를 철회하거나 폐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자료 요구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단순 현황파악을 위해 한 것이다. 특정 도서를 배제시켜라 하는 의도도 아니다"고 밝혔다. '세월호, 박원순, 손석희 도서 현황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나'는 물음에는 "관련 도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구한 것이지, (보유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25일 충청남도의회 제346회[임시회](2023.07.12 ~ 2023.07.25) 2차 본회의, 지민규 충청남도의회위원의 긴급 현안질문-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 그리고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답변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답변

<http://council.chungnam.go.kr/kr/cast/plenary.do>

2023년 7월 25일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보도
충남 학교·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 논란
지민규 도의원 25일 긴급현안질문 통해 문제 제기
김태흠 지사 "36개 도서관 열람 제한"…김지철 교육감 "책 폐기 논의"

“애널 섹스, 항문 애무, 스리섬,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 이런 용어가 담긴 성교육 도서가 충남지역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국민·아산6)은 25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짚었다. 그는 먼저 “젠더 이슈나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도 많고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에 이러한 주제를 꺼내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도저히 이러한 도서로 아이를 지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성과 천안, 서산, 예산 등 학교에서 보유 중인 도서와 충남도서관,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 책들의 내용을 일일이 거론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홍성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책에는 부적절한 표현과 함께 항문성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천안, 서산, 예산 등 7개 학교에 보유 중인 한 책에는 국어사전에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뜻하는 ‘수간’에 대해 사람의 성적 욕망은 매우 다양하다고 포장하고 있다. 이 책 뒷면에는 영국에선 책 몰수, 그리스에선 출판사 대표가 구속됐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여성의 성기 모습이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책도 충남도서관과 아산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지 의원은 “성교육의 목적은 생명의 존중감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은 도서를 어른의 지도 없이 접하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을 배울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여성가족부가 회수한 7종 10권의 도서를 살펴봤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전부 뜨거운 표현이 담겨있었다.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해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젠더 문제와 소수자 권익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선 주에 따라 성 소수자의 공공장소 입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다”며 “다만 수간 등 낯 뜨거운 용어가 담긴 성교육 자료를 만드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소수자 옹호를 내세우는 의도를 보면 일반인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김지철 교육감은 “책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거나 교육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앞으로 교육청 내 성교육과 도서 업무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도서관에서 성교육 관련 도서를 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충 질문에 나선 지 의원은 김일수 부교육감을 답변석에 세워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교육감은 “5월부터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어제도 교육국장 주재로 협의회가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도출하겠다. 관련 논의와 검토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부교육감으로서 실무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부교육감은 또 “가정과의 연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 의원 질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의 질의 내용 등을 교육부에 전달해 학생들에게 건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답변.(회의록이 아직 충청남도의회 누리집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필자의 녹취 초고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회수 조치한 도서를 살펴보았는데, 낯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으로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연령대,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교육 목적에 부적절한 내용이라 생각하여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습니다. 젠더 문제와 소수자 권익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성 소수자의 공공장소 입장을 제한이라든가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제한 등 차별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다. 심지어 수간 등 여러 가지 낯 뜨거운 용어가 담긴 아이들 성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 소수자 옹호를 내세우는 의도를 보면 일반인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http://council.chungnam.go.kr/viewer/video/minutes/3330.do?pos=5700#app>)

2023년 7월 25일 한겨레신문 양선아 기자 보도

보수 학부모들, 인권 책 117권 금서 요청…‘위안부’ 그림책도

보수 성향 민간단체들이 젠더·성평등·인권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이 “유해 도서”라며 공공도서관에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 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최근 일부 도서관들이, 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한 도서출판물 117종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뢰했다. 지난 18일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공문을 보내 “민원 제기된 117종 출판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출판 과정 적합성에 대한 단체의 의견서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출판 관련 단체들에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실상 ‘금서 지정’ 활동이 도를 넘자, 민원에 취약한 도서관이 출판계 안팎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공론화에 나선 모양새다.

도서관들이 출협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전국학부모연합회’ 소속 단체들에서 활동한다는 학부모들과 청주 시민단체 ‘행동하는학부모연합회’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이들 도서관에 <10대를 위한 성교육> <꽃할머니>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달라도 친구> 등을 포함한 총 117종 책에 대해 “유해 도서”라며 일반 이용자의 열람을 제한하고 대출을 금지하고 폐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행동하는학부모연합회 대표는 26일 <한겨레>에 “나는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117종 전체가 아닌 성교육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나다움책’ 시리즈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했으며, 직원 및 관장과 두 차례 대화를 했을 뿐 그 행위도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이 같은 행위는 미국 보수 학부모단체들의 ‘금서 지정’ 운동을 닮은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유해’ 도서라고 밝힌 어린이·청소년 책들은 대체로 젠더·성평등·인권 등을 주제로 삼은 책들이다. 허은미 작가의 <달라도 친구>는 성격·외모·취향·장애·가족구성·인종 등이 각각 다른 아이들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화로,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다. 권윤덕 작가의 <꽃할머니>는 2007년 한·중·일 작가들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책을 동시 출판하기로 해 권 작가가 ‘위안부’ 피해 여성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그림책이다. 권 작가는 최근 세계적인 아동문학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CAA) 2024년 한국 후보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작가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1조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한 도서관법을 두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해야 한다”(2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사회 이용자의 요구’를 장서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어, 사실상 ‘금서 지정’ 요구에 해당하는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협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돼 내부 논의 중이며 조만간 의견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 26일 문화연대 논평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보수단체는 근거 없는 금서지정 요청을 중단하라!

보수 성향의 민간 단체들이 인권·평화·성교육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이 “유해 도서”라며 공공도서관 등에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제기한 도서출판물 117종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뢰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보수단체들이 지적한 도서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개별 도서관 등에 반복된 민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민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토론과 협의보다는 자기 생각만 옳다는 식의 떼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마저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에 불과하다.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된 책들을 살펴보면 젠더·성평등과 같은 인권을 주제로 하거나,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 관련 도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들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내용들이라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유해 도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한 책들을 유해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이들 도서들이 금지도서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온 제도이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규제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특정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데 적절한 방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불모로 한 보수 진영의 이념 논쟁 프레임에 불과하다. 진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를 원한다면 검열과 규제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특정 도서와 도서관에 대한 마녀사냥식 논쟁 방식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자신들은 민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책들을 편견 없이 읽고 나누는 지식의 공간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

이 서로 영향을 주고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지적 탐구의 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단체들의 근거 없는 금서 도서 지정 요청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도서관을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라!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2023년 7월 26일
문화연대

**2023년 7월 26일 <경향신문> 사설
도지사도 가세한 보수단체 ‘도서관 검열’ 중단하라**

충남지역 공공도서관 서가에서 성교육·성평등 어린이책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들이 “다양성·성인지 등을 근거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도서는 마땅히 폐기처분돼야 한다”며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5일 “7종 도서에 대해 도내 36개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도서 검열을 한 것이다.

단체들이 퇴출을 요구한 120종은 주로 성교육·성평등 관련 아동도서들이다. 이 가운데 김 지사가 열람을 제한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를 비롯한 책 7종은 2019~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지정됐다가 보수·종교단체 항의로 철회된 것들이다. 해외에서 유아 성교육 등에 널리 쓰이는 교재인데도 김 지사는 “낯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여당 모 의원은 울산 지역 고교 도서관 내 현대정치사 인물 도서 현황자료를 요구해 학교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는 반발을 샀다. 경북 경산시가 ‘시민 독서감상문대회’ 주최 측에 좌편향 도서 선정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일도 있었다.

도서 통제·검열은 엄혹했던 유신·5공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빚은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일이다. 2015년 뉴라이트 단체들이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추천도서가 좌편향됐다고 공격하자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해당도서를 폐기토록 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비판이 거셌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속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사전제재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평가 기회를 얻기도 전 정부나 제3자가 개입해 걸러내는 조치까지 모두 검열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부 주장을 근거로 함부로 검열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역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도서관은 그런 문화를 키워내는 공간이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사고를 탄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권력을 이용한 도서 검열은 출판계와 문화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은 권력 눈치를 보는 획일주의와 문화빈곤에 빠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도서 검열

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23년 7월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입장문 발표

유해성 출판물에 대한 대출 금지 및 폐기 요구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입장

최근에 충청도 소재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주로 성교육 및 성평등, 성적 지향과 관련된 도서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룬 도서들에 유해성을 이유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민원인들은 유해도서 목록 117종을 거론하며 일반 이용자에 대한 열람 제한, 대출 금지와 함께 폐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문제가 제기된 도서들은 도서관의 전문인력인 사서들에 의해 선정 및 관리가 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없이 전국의 도서관에서 대출이 되고 있는 도서로서 사회적 공동의 가치와 유익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도서관과 사서는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기반하여 개인의 사상과 편견을 배제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도서를 선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서들을 유해도서라 명하고 접근을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도서관과 사서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하여 국민 주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일, 특정 출판물이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표현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문화적 특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문화적 권리 보호와 차별시정, 인식제고 등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특정 분야의 도서를 제한한다는 것은 문화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개인에 대한 존엄과 권리,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낙인과 검열을 중단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한 걸음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23. 7. 27.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정책담당 상무이사 한상준

2023년 7월 27일 한국출판인회의 입장문 발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 민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이광호)는 최근 충청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유해성 출판물의 도서관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 관련 민원이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도서 제공의 의무와 권한을 가진 도서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 민원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랜 기간 국민의 지식 복지를 실현하고 문화 향유의 토대를 구성하는 밑바탕이 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유해성 출판물의 도서관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 관련 민원은 성교육 또는 인권 등 특정 주제 관련 도서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은 다양한 도서를 읽고 사유함으로써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개념의 확장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이는 한 개인을 더 성장한 존재가 되도록 이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모여 성숙하고 바람직한 시민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니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읽을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것은 한 개인에게나 우리 사회에나 전혀 이로울 게 없는 선택이다. 이외에도 특정 주제 도서의 열람이 제한될 경우 해당 주제와 관련한 저작물의 창작 의욕이 하락할 게 자명하고, 출판사 또한 출간 분야 선택의 폭이 좁아져 출판의 다양성을 해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독서 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출판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조는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복지의 발전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종이책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뜻한다. 그렇기에 도서관 이용자가 다채로운 정보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서관은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정쟁이나 이념 갈등으로부터 필히 자유로워야만 한다. 즉, 어느 한 단체의 입장이나 특정 주장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판사는 자유롭게 책을 출판할 권리가 있고, 도서관은 그 책을 편견과 제한 없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디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출판사와 저자, 도서관과 독자 모두가 책으로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자료3] 간행물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⁴⁰⁾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는 처음 도서와 잡지에 대한 순수한 자율규제 기구로 출발하였다. 1964년 한국잡지협회가 잡지윤리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고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한 후 1965년 한국잡지윤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동 위원회는 잡지윤리실천요강의 준수를 권고하는 한편, 이에 저촉되는 잡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자율적 통제를 해왔다. 그러다가 1970년 문화공보부의 종용에 따라 기존의 잡지윤리위원회,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 및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통합하여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다시 1976년 주간신문윤리위원회를 흡수하여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가 성립되었고, 1991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도서·잡지·아동만화 등의 게재내용과 광고내용을 심의하고,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한 회원잡지사 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주의·해명·경고·정정·게재중지·취소·사과·변상 등의 제재를 가하여 왔다. 이 때까지 ‘간윤’은 사단법인 형태를 취하였고, 잡지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단행본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행하였다.

1-2. 1997. 7. 1.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됨으로서 그에 의해 ‘간윤’은 문화체육부장관 소속 하의 법정기구로 탈바꿈하였다. ‘간윤’은 주로 사후심의를 행하였으나, 업계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의에 응하였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화의 유해성 여부는 경찰 등 단속기관이 아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전담하게 되었다. 그 이전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만화의 판정 및 단속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속을 행하여 온 경찰과 만화방, 서점, 도서대여점 등 사이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법정기관으로 탈바꿈한 ‘간윤’은 자율규제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원 구성이나 추상적 심의기준 때문에 정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1-3. 그 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는 2003년 출판및인쇄진흥법(법률 제6721호, 2002. 8. 26. 제정, 2003. 2. 27. 시행)에 옮겨 규정되었고, 동법은 다시 2007. 7. 19. 출판문화산업진흥법(법률 제8533호)으로 개칭되었다.

2.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규정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구성하며(동법 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②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간

40)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는, 박용상(변호사)의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헌법논총』, vol.21, pp. 75-250, 2010년, 헌법재판소)의 현행법상 각종 매체에 대한 사전심의회제도-간행물에 대한 심의 부분을 정리한 것임.

행물의 유해성 심의 ③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을 행한다(동법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에서 유해간행물로 결정하게 될 기준은 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③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등이다(동법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항).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위원회의 심의 결과, 첫째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고, 그 사유와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제19조의2 고시 및 통보 등 제1항 및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릴 수 있다(제19조의2 고시 및 통보 등 제4항). 유해간행물로 결정 고시된 간행물을 관계 공무원이 발견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간행물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고,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이를 직접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폐기 등 제1항). 둘째, 위원회는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간행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기재되고(청소년보호법 제21조), 그 배포 및 유통 등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청소년보호법 제14조 내지 제20조). 또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는 경우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과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 추천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동법상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유해성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3항).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그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동법 제13조 제1항),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입 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3.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는 처음 도서와 잡지에 대한 순수한 자율규제기구로 출발하였으나, 1997년 제정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법정기구로 탈바꿈하였고,

이래 그 위원 구성이나 추상적 심의기준 때문에 정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그 활동이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살핀다.

먼저, 국내 간행물에 관한 간윤의 심의제도를 보면, 사전에 제출의무를 부과하거나 일률적·망라적 심의를 전제로 출판 허가제를 설정한 것은 아니며,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 등 특정한 종류의 출판물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한 경우 간윤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관계 행정관청이 이를 폐기 또는 수거하여 단속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간윤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게 될 기준으로서 동법 제19조가 규정하는 것을 보면 긴급하고 중대한 반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명확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전검열 금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언론규제라는 입법적 결함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하려면 법을 개정하여 간윤의 구성이나 직무수행에 행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간윤의 심의절차나 관청의 처분절차에 관계자의 청문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사후의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사법심사에서 유해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폐기하지 않고 압류하는데 그쳐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다음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제도에 관하여 보면, 동법이 규정하는 종류의 모든 수입 간행물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국내의 배포 여부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종류의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고, 이 수입추천 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의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동법 제28조 제1항 제2호) 현재가 규정한 사전검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동법은 수입추천을 요하는 외국간행물을 ①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②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에 국한하고 있으며,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이 청소년유해간행물 또는 동법상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유해성 심의를 의뢰하고(동법 제12조 제3항),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입 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게 되어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교묘한 법적 기교에 의해 사전 검열의 금지를 회피하고 있기는 하나, 간행물의 종류가 시사적이거나 정보제공적인 것이 아니라 선정적이거나 청소년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은 간행물에 국한하고 있는 한편, 그에 의해 보호될 공익이 중대함에 비추어 보면 부득이한 규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¹⁾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선 일반 간행물에 관한 심의 및 규제 제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1) 사전검열이 엄격히 금지되는 독일에서도 1961년에 제정된 독일의 '형법 기타 반입 금지의 감시에 관한 법률'(이른바 Verbringungsgesetz, BGBI. 1 S. 607)은 주 세관 공무원은 여행 중 읽을 거리를 제외하고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녹음 테이프, 음반, 필름 등 수입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그것이 독일 형법상 국가보호조항에 저촉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동법 제1조 및 제2조), 특히 형법 제93조의 국가를 위협하는 간행물이라는 혐의가 확인되면 그 물건은 검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연방우체국과 연방철도 관할 관청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갖는다. 허용할 수 없는 우편송달물의 내용심사를 규정하는 독일 우편령 제13조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선전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영화는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한 반입할 수 없다."(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합헌성을 인정하였다(BVerfGE 33, 52(1972)).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하여⁴²⁾

1. 청소년보호위원회

각종 매체의 표현내용 중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우이다. 종전 각종 매체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심의기구 및 기준은 여러 법률에 산재하였다. 1997년 신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위와 같이 각개의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심의에 관하여 그 심의기관 및 그 심의대상 매체물을 총괄 규정하고, 나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총괄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반과 비디오물, 전자유기기구기판, 공연물, 방송프로그램, 간행물, 광고선전물, 기타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에 대하여는 개별 매체물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포장 의무.판매금지.구분격리.방송선전제한.광고시간제한 등의 금지.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통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와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각 심의기관 및 지도.단속기관, 청소년보호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정화와 단속의 실효성 보장 및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의 정확을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상 심의의 성격과 그 위헌 여부

청소년보호법상의 심의가 사전심의인가 사후심의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청소년보호법 제17조 1항), 청소년유해표시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동법 제17조 제2, 3항),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 처벌되게 되어 있어(동법 제51조 3호),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는 사전심의가 전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관계기관의 심의.결정이나 확인을 거쳐 고시된 매체물(법 제2조 제3호)이고, 위와 같은 결정이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고시되기 이전이면 실제로 청소년 유해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실질적 의미의 청소년유해매

42)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는, 박용상(변호사)의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헌법논총』, vol.21, pp. 75-250, 2010년, 헌법재판소)의 현행법상 각종 매체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전규제 부분을 정리한 것임.

체물)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동법상의 유해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사전 심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 없이 동법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고(동법 제12조 제4항), 이렇게 표시·포장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된다(동법 제12조 제6항, 제2조 3호). 이것은 수많은 간행물에 대한 관할 행정당국의 단속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규정이 사전검열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사전검열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 상 규제제도의 문제는 실제로 청소년 유해기준에 해당하는 실질적 의미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위와 같은 결정이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고시되기 이전에 유통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복제와 전파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보아 이미 전파가 상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후에 심의를 행하고 유통을 규제하게 된다면 청소년보호법이 의도하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고, 이러한 법적 미비는 심각한 것이다. 이를 일부나마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부단히 영리를 추구하는 욕망에 대해 자율규제의 기대는 충분할 수 없는 것이다.

위헌시비 때문에 사전심의에 의한 검열논란을 기피하려는 노력이 이러한 입법적 결함을 결과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청소년보호라는 긴절하고 우월적인 법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려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심의기관에 의한 적법절차와 명확성 요건을 갖추어 사전심의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04. 1. 29 개정 전 청소년보호법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간행물의 경우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이를 국내유통예정일 10일전까지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간행물의 경우에는 국내유통예정일 2일전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동법 제13조 1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11조), 이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행해지는 것이었고 위헌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

IFLA/FAIFE
1999년 IFLA이사회 승인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UN의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지적자유를 지원하고, 지키며, 향상시키고자 한다. IFLA는 인간은 지식의 표현에 접근하며, 사상과 지적 활동을 창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IFLA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믿는다. 알 권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IFLA는 지적자유는 도서관과 정보전문가에게 있어 기본적인 책임에 속한 것임을 주장한다. IFLA는 그러므로, 도서관들과 도서관 직원들은 지적자유 원칙,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IFLA는 이러한 원칙의 승인과 현실화를 위하여 우리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IFL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도서관들은 정보, 상상력의 아이디어와 작업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지식, 사상, 그리고 문화로 향해 열린 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도서관들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평생교육,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문화적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도서관들은 지적자유 원칙의 개발과 유지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 도서관들은 지식의 표현과 지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증하고 조장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서관들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도서관들은 전문적인 고려, 그러나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입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도서관 자료들과 서비스의 선택과 유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 도서관들은 어떠한 유형의 검열에 대하여도 반대하고, 자유롭게 수집하고 조직하고 유통시켜야 한다.
- 도서관들은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자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인종, 신념, 성별, 나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 도서관 이용자들은 개인적인 사생활과 익명성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서들과 다른 도서관 직원은 이용자들의 신상명세 혹은 그들이 이용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 도서관들은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공중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지적 자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도서관들에 있어 사서들과 다른 고용인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다.

● 사서들과 다른 전문적인 도서관 직원들은 그들의 고용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그들의 책임들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수행에 있어 둘(고용주와 이용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가 우선권을 가진다.

이 성명은 IFLA/FAIFE에 의해 준비되었고 1999.3.25.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FLA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참고자료5]

도서관인 윤리선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997. 10. 30. 제정

2019. 02. 28. 개정